

박준홍. 2022.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자료 주해” 『인권연구』 5(1): 179-248.
Park, Jun Hong. 2022. “A Commentary on Statistical Data Related to Hyeongje-welfare Institution”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2): 179-248.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2.5.1.179>

[인권자료]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자료 주해*

박 준 홍**

— 목 차 —

1. 서론
2. 국가통계
3. 지방 통계
4. 형제복지원 통계
5. 결론

1. 서론

1.1. 자료 소개

이 글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바탕이 되는 1960-80년대의 부랑아 정책과 관련하여 취합 및 정리한 각종 통계들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당시의 부랑아 정책이 거시적인 국가 차원

* 이 글은 필자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서 자원활동을 하며 정리한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물이다. 자원활동 기간 동안 많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신 진실의 힘 활동가님들과 조용환 변호사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취합해주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이 글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인권연구 편집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과 지방 차원, 또 개별 복지원 차원의 통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당시의 부랑아 현황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보건사회통계연보(1955-90년도)와 경찰통계연보(1953-90년도)를 검토하였다. 보건사회통계연보에는 1974년까지의 부랑아 단속 현황과 여러 수용시설들의 입소자, 퇴소자, 재소자 현황, 그리고 입퇴소 원인 등이 나와있고, 경찰통계연보에서는 연도별 부랑아 단속과 처리 현황, 떠돌이나 구걸과 같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 현황, 가두소년 보도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 차원에서는 서울통계연보(1961-89년도)와 부산통계연보(1966-90년도)를 참고하였다. 각 연도별 연보에서 부랑아 수용자와 수용보호시설 현황을 참조하였고, 부랑아 선도 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사업비의 변동 양상과,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형제복지원에 관해서는 세 가지 자료를 참고하였다. 첫째는 형제복지원에서 발간한 잡지 ‘새마음(1985년도 5월호-1987년도 2-3월호)’이다. 이 잡지에는 형제복지원의 인원 변동 현황과 수용자의 상태 등이 상세히 나와있는데, 이를 인원 및 시설 관련 부분과, 정신질환자 및 요양원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확보한 기록물(이하 ‘대책위 기록물’)이다. 대책위 기록물은 형제복지원의 설립과 운영 방식, 형제복지원 사건의 전개 과정 등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국가기록원 자료와 부산시청 자료 등의 여러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예산 및 인력 관련 부분을 취합하여, 형제복지원의 연도별 예산과 인력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은 이길로의 논문(1986)에 나와 있는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들이다. 이 논문은 확보된 새마음지가 다루는 시기 전의 새마음 통계들을 수록하고 있다.

자료의 신뢰성에 관하여 짚어줄 점이 있다. 보건사회통계연보와 경찰통계연보는 1950년대에 작성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통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고, 그 이후 통계 작성에 관한 여러 시행령과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1950년대의 통계자료의 신뢰성은 그리 크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복지원에서 발간한 새마음지의 통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성한 통계이므로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은 당시 부랑아 정책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950년대의 부랑아 정책은 당시의 통계를 배경으로 시행되었을 것이고, 형제복지원의 자체 통계도 어떠한 형태의 ‘복지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들도 다른 자료와 함께 분석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통계자료를 표로 정리하고, 필자가 볼 때 특기할 만한 점들을 덧붙여 각 자료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서술하였다. 부록에서는 개별 통계 자료들을 겹치는 부분만 제외하고 최대한 원래의 자료에 가깝게 수록하였고, 이길로 논문(1986)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옮겨놓았다. 또한 참조한 통계의 연도와 제목을 병기하여, 원문 대조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부록 부분은 재단법인 진실의 힘 홈페이지(www.truthfound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선행 연구 검토

들어가기에 앞서 1960-80년대의 부랑아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 글이 다루는 통계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보건사회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유진(2019)은 성인인 부랑인에 대한 통계가 1984년에야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 1975년 이전까지의 정책이 주로 부랑아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아람(2011, 2020)은 1950년대의 부랑아 수용 양상

과 1960년대의 부랑아 조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5·16 군정기 부랑아 정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재구성한다. 한편 박홍근(2015)과 이소영(2016)은 부랑아수용보호상황표가 부랑아단속및조치상황표로 대체되는 사실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적극적으로 단속했던 당시 사회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김일환(2021a)은 보건사회통계연보를 포함한 당시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1960-70년대 부랑아 및 부랑인 수용시설의 목록을 재구성하고, 당시 시설들의 설립 과정과 입소부터 퇴소까지 각 단계별로 시설들이 작동하는 양상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김일환(2021b)은 지역별 부랑아 단속 상황표를 통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지역 역시 단속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면서, 해당 지역에서 부랑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에 반해 경찰통계연보에 나오는 부랑아 단속 관련 통계는 비교적 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추지현(2018)은 부랑아를 포함한 여러 문제 집단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1970년대의 ‘사회악’ 척결 기획이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수 있게 한 형사사법적 기제를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통계연보의 결인, 부랑아단속상황표가 1960년대 중반 부랑아 단속의 급증을 예시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 차원에서 부랑아 정책이 시행되는 양상을 해당 지역사회의 통계연보와 관련해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부랑인 시설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 연구로는, 부산 지역에서 부랑인 수용시설들 사이의 동학을 보여준 김일환(2021b)이나, 역시 부산 지역에서 사회복지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당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 김영중(2003)이 있다.

형제복지원 관련 연구에서 새마음지의 통계를 직접 사용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복지 정책의 맥락에서 형제복지원 내의 사업이 다각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대책위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소준철(2020)은 정부의 자활정책을 배경으로 형제복지원 내의 자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과, 해당

사업이 성공할 수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김일환(2019)도 형제복지원의 역사와 수입구조를 검토하며, 당시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수익성을 띠게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 글에서 정리한 통계자료를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을 보충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령 보건사회통계연보의 경우, 수치뿐만 아니라 통계표를 구성하는 범주가 바뀌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주 변화의 원인을 추적함으로써 부랑아에 대한 인식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다른 특정 시기의 정책이 다른 시기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경찰통계연보는 단속의 실제 시행 주체였던 경찰에 의한 단속 양상을 보여준다. 196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보건사회통계연보와 경찰통계연보 모두에서 부랑아 단속과 관련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다. 1975년에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제정된 맥락을 고려하면, 그 이전과 이후 각 부처별로 단속 양상이 어떠했는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통계연보에는 부랑과 구걸을 경범죄로 처벌한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랑과 구걸이 단속의 대상이 된 부랑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유의미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통계연보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서울통계연보와 부산통계연보에는 각 구별 부랑인 시설의 현황과 사회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나와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단속되거나 수용되는 비율이 높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부랑아 수용 인원과 사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에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 현상도 당시 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길로 논문과 새마을지에 나타나는 형제복지원 통계는 그 자체로 신뢰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당 통계가 자료 내부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

해서 왜곡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그 모순이나 왜곡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이 글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당시의 부랑아 정책을 다루는 연구가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지향한다. 이 글에 나온 여러 통계들은 단편적으로 분석되기보다는 상호적으로 혹은 다른 통계나 기록의 맥락 안에서 면밀히 분석되었을 때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1960-80년대 한국 사회의 부랑아 정책의 시행 양상과 그 여파에 대한 그림을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국가통계

2.1.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통계연보는 1955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연보를 참조하였다. 보건사회통계연보의 발행주체는 1962년도 연보까지는 보건사회부 총무과, 1966년도부터는 기획관리실(1963-65년도 연보는 확인 불가)이다. 1969년도 연보부터는 발행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1955-57년도 연보는 통권으로 구성되었고, 1975년도 연보는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연보에서 주로 사회복지시설분포상황, 부랑아단속및보호상황표, 아동복지시설수용현황, 부랑인시설수용현황표를 참고하였는데, 우선 부랑아시설과 부랑아 단속과 관련된 통계표를 자세히 살펴보자.

2.1.1. 부랑아시설 관련 통계 (55'~89')

부랑아시설과 관련된 통계로는 다음의 통계표를 참조하였다.

- ① 부랑아수용보호상황표
- ② 아동복지시설수용자동대표(부랑아)
- ③ 아동복지시설현황(부랑아시설)
- ④ 부랑아시설수용현황(아동)
- ⑤ 부랑인시설수용현황(성인)

각각의 통계표는 중간에 삭제되거나 신설되기도 한다. 가령 ①은 1964년도 연보까지만 나타난다. 그러나 1964년도 연보의 ①과 ②에서 1955-63년의 부랑아 항목의 수치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수치의 일치를 바탕으로 하여, 이름이 다른 통계표들을 부랑아시설과 관련된 하나의 통계자료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통계표로 구성된 다른 통계에서도 활용하였다.) 각각의 통계표들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알아보겠다.

①은 1963년도 연보까지 나온다. 1964년부터 나오는 ②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 통계표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었다. 내용을 보면 1961년을 기점으로 수용자수(60': 3090, 61': 9163)와 퇴소자수(60': 3143, 61': 8482)가 크게 증가하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퇴소자 중에서 '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1962, 1963년에서 '기타'가 다른 항목에 비해 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②는 1976년도까지 나온다. 이후부터 '아동복지시설현황'의 하위 항목으로 나온다. 이때 1969-71년도에만 '아동복지시설수용상황/현황(부랑아)'으로 잠시 명칭만 변화한다.

①과 ②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수용자수’ → ‘입소자수’

‘친족 또는 연고지 이송’ → ‘부모 또는 연고지에 인도’

‘보호자 위탁’ → ‘위탁보호’

‘만기퇴소’가 ‘기타’에 들어감.

1967년도 연보와 이후의 연보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범주는 다음과 같다.

‘기아인수(Accepted Abandoned Children)’ → ‘기아(Abandoned)’
‘부랑아인수(Transferred from Vagrant Children Center)’ → ‘부랑아(Vagrant)’
‘위탁아(Charged Entrust)’ → ‘위탁아(Foster Care)’
‘거택구호(Relief for Living Quarter)’ → ‘거택구호(Family Helper)’
‘위탁보호(Entrust Protection)’ → ‘위탁보호(Foster Care)’

1969년도 연보와 이후의 연보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정착(Settlement)’ → ‘정착(Resettlement)’

1973년도 연보와 이후의 연보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범주는 다음과 같다.

‘부랑아(Vagrant)’ → ‘부랑아수용소(From Vagrants inst.)’

한편 1964년도 연보부터 여러 변화가 통계에 반영된다. 우선 ‘입소자수’의 하위 항목으로 ‘고아’, ‘기아인수’, ‘부랑아인수’, ‘전입’, ‘위탁아’, ‘기타’ 항목이, 그리고 ‘퇴소자수’의 하위 항목으로 ‘수용해제’, ‘거택구호’, ‘정착’, ‘양자인도’ 항목이 신설된다. 또한 기관수가 전년 대비 절반 정도로 급감(63’: 24, 64’: 13)하고, ‘입소자수’의 절반 이상이 ‘기타’에 해당한다. 한편 1967-68년에는 ‘정착’이 다른 해에 비해 많고(66’: 10, 67’ 596, 68’: 523, 69’: 312), 1975년에는 ‘기타’가 ‘입소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③은 1984년도까지 나오고, 그 후에는 ‘부랑아시설수용현황’의 ‘아

동' 항목으로 나오는데, ②와 비교했을 때 표의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1977년도 연보까지는 '시설수', '아동수'만 나오고, 1978년도 연보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년말현재재소자'로 구분된다.

④는 1985년도부터 나오는데, 이전의 통계표에 비해 구체적이다. 가령 입소경위, 퇴소경위, 건강상태, 장애종별이 세분화되고, '직업자활(Self-Support vocation)'이 신설된다. 장애종별 중에는 '정신박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입소자는 1984년을 기점으로 감소(84': 5213, 85': 3414)한다. 입소자중 '행정기관 의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84': 5213 중 3262).

⑤는 1985년도부터 나타난다. 이전까지의 통계가 부랑아(아동)만 다루었다면, ⑤는 부랑인(성인)에 대해 다룬다. ④와 마찬가지로 입소자중 '행정기관 의뢰'가 가장 많고(85': 3414 중 2723, 86': 3177 중 2732), '정신박약'보다는 '정신질환'이 훨씬 많다.

2.1.2. 부랑아 단속 관련 통계 (62'~74')

부랑아 단속과 관련한 통계로는 1962년도 연보부터 1974년도 연보까지 나타나는 부랑아단속및조치상황표를 취합하였다. 각 연도별로 달라지는 범주를 살펴보겠다.

1963년도 연보와 이후의 연보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수용(Accomodate)' → '보호소 수용(Accomodate)'
 '감화원이송(Vagrant Children Inst.)' → '교호소 이송(Reformatory Children Inst.)'

1964년도 연보와 이후의 연보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범주는 다음과 같다.

'보호소 수용(Accommodate)' → '부랑아보호소수용(Accommodate)'

1970년도 연보와 이후의 연보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정착지(Settlement)’ → ‘정착(Resettlement)’

또한 1974년도부터 ‘직업보도시설전원’, ‘고용위탁’, ‘도망’, ‘사망’이 새로 집계된다.

한편 단속인원은 1964년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다(64’: 29652, 65’: 25599), 1969년부터 다시 증가세(68’: 16498, 69’: 19883)를 보이고, 1972년부터 다시 감소(72’: 19367, 73’: 13344)한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정착’이 부랑아시설 관련 통계에서는 1967, 1968년도에 많았던 것에 비해, 단속 관련 통계에서는 1963, 1964년에 많다는 점과 (62’: 229, 63: 675, 64’: 416), 1973년 이전까지는 대개 단속한 인원의 절반 이상을 수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모든 연도에 단속인원을 모두 수용하였다.

2.1.3. 정리

[표 1]은 1955-89년까지 각 연도별 부랑아 관련 시설, 입소자, 재소자, 단속인원, 또 부랑인(성인) 관련 통계를 취합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기관당 입소자, 기관당 재소자는 필자가 계산한 수치이다.

[표 1] 보건사회통계연보의 부랑아 수용, 단속 관련 통계표 취합

1. 부랑아 총수 (아동)					
연도	기관수	입소자	재소자 (총수)	기관당 입소자	기관당 재소자
1955	43	2,051	1,415	47.7	32.91
1956	43	7,335	5,113	170.58	118.91
1957	27	3,988	3,598	147.7	133.26
1958	45	4,378	5,401	97.29	120.02
1959	22	2,633	3,725	119.68	169.32

1960	21	3,090	3,672	147.14	174.86			
1961	17	9,163	4,353	539	256.06			
1. 부랑아 총수 (아동)						2. 부랑아 단속		
연도	기관수	입소자	재소자 (총수)	기관당 입소자	기관당 재소자	단속인원	수용 (보호소/부랑아 보호소)	
1962	23	13,854	4,769	602.35	207.35	18,323	12,761	
1963	24	12,709	5,408	529.54	225.33	19,451	12,259	
1964	13	11,179	4,715	859.92	362.69	29,652	14,571	
1965	11	7,576	4,358	688.73	396.18	25,599	10,647	
1966	10	8,587	4,484	858.7	448.4	21,612	12,636	
1967	12	9,500	4,253	791.67	354.42	19,267	12,138	
1968	10	8,129	4,128	812.9	412.8	16,498	10,599	
1969	10	8,696	3,659	869.6	365.9	19,883	11,896	
1970	10	7,186	3,398	718.6	339.8	21,187	12,127	
1971	9	6,386	3,095	709.56	343.89	20,592	12,085	
1972	8	6,746	2,830	843.25	353.75	19,367	13,157	
1973	12	8,875	2,779	739.58	231.58	13,344	5,520	
1974	12	5,283	3,458	440.25	288.17	9,997	2,192	
1975	11	6,929	3,590	629.91	326.36			
1976	11	5,063	3,017	460.27	274.27			
1977	11	7,598	2,937	690.73	267			
1978	11	7,962	2,968	723.82	269.82			
1979	11	8,410	2,865	764.55	260.45			
1980	11	7,746	3,276	704.18	297.82			
1981	11	6,755	3,807	614.09	346.09	3. 부랑아 총수 (성인)		
1982	10	5,309	3,629	530.9	362.9	기관수	입소자	재소자 (총수)
1983	9	5,344	4,082	593.78	453.56	25		10,049
1984	8	5,213	2,789	651.63	348.63	28	15,980	11,744
1985	8	3,414	2,763	426.75	345.38	27	15,337	12,033
1986	9	3,177	2,969	353	329.89	27	13,185	13,180
1987	10	3,244	3,043	324.4	304.3	27	9,689	8,571
1988	9	2,738	3,076	304.22	341.78	29	9,295	9,028
1989	9	2,464	3,107	273.78	345.22	29	9,024	9,763

[표 1]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입소자의 수는 변동이 심한 데 비해 재소자의 수는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입소자는 당해에 시설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인원을, 재소자는 당해 말에 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을 일컫는다. 시설에 들어오는 인원의 변동이 큰 데 반해 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의 변동은 크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수용시설을 나가는 퇴소자가 많았고, 따라서 수용자들의 수용기간이 짧았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기관당 입소자는 1960-64년에 크게 증가(60': 141.14, 64': 859.92)하고, 그 추이를 계속 유지한다. 이는 입소자의 수가 급증(60': 3090, 64': 11179)하고 기관수가 급감(60': 21, 64': 13)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부랑아 단속 통계에서도 단속인원은 1964년에 정점을 찍는다. 이로부터 1960년대 초반에 시행된 일제 단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1974-76년에는 입소자의 수가 감소(73': 8875, 74': 5283, 76': 5063, 77': 7598)한다. 이는 부랑아 단속 통계에서의 단속 수(73': 13344, 74': 9997)와, 특히 수용 수(73': 5520, 74': 2192)가 급감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가 충분치 않아서 [표 1]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성인 부랑자인 부랑인 관련 통계를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훨씬 많고, 부랑인 역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1984년을 기점으로 부랑인과 부랑아 입소자수가 모두 줄어들지만(84': 5213, 85': 3414), 부랑인의 경우 통계가 나타나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감소 기점이 1984년인지는 확실치 않다.

2.2. 경찰통계연보

경찰통계연보는 1953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연보를 참조하였다. 경찰통계연보의 발행주체는 1973년도 연보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기획과, 1974년도 연보부터는 내무부 치안본부 기획(감사)과, 1986년도 연보부터는 치안본부 치안기획관실이고, 1991년도 연보의 발행주체

는 경찰청 기획관리관실이다.

1958-60년도, 1962년도의 경찰통계연보는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를 제외하고 각 연보에서 결인, 부랑아단속상황표, 각종법규위반사범분석, 가두직업소년현황표, 가두직업소년보호상황, 청소년선도를 참고하였다. 한편 경찰통계연보는 각 연도별 경찰 관련 법령, 훈령 등의 개정 사항과 경찰 예산 통계도 수록하고 있다.

2.2.1. 부랑아 단속 관련 통계 (62'~87')

부랑아 단속에 관한 통계인 결인, 부랑아단속상황표는 1965년도 연보부터 1985년도 연보까지 나오고, 그 후 가출인·미아·기아·결인·부랑아발생및처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몇몇 연보에서부터 표의 형식이 달라진다. 가령 이전까지 ‘단속수’, ‘수용보호’, ‘귀향간선’, ‘연도인계’, ‘개척지’, ‘입건’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가 1967년도 연보에서는 단속 총수만 월별로 나오는 형태로 단순화된다. 이는 1975년도 연보부터 월별이 아닌 분기별로 바뀐다. 이후 1986년도 연보부터는 연령(‘20세 미만’, ‘20세 이상’), 처리 현황(‘사회과 인계’, ‘연고지 인계’, ‘귀향’, ‘기타’)이 나온다. 이때 1986년도 연보에는 1977년도부터의 통계도 나오고, 지역별 단속수도 나오기 시작한다.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1964년에 ‘개척’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63': 285, 64': 956, 65': 392), 1977년도 이후부터는 단속 후 사회과로 인계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77': 17352 중 9701, 78': 13448 중 7922).

2.2.2. 경범죄 단속 관련 통계 (69'~88')

각종법규위반사범분석에서 경범죄 항목은 1953년도 연보부터 계속 등장한다. 그러나 1968년도 연보까지는 ‘통금위반’, ‘기타’로만 항목이 나뉘고, 그 이후부터 부랑과 구걸에 관한 항목이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1972년도 연보부터는 지역별 통계도 찾아볼 수 있다. 시기별

로 부랑과 구걸에 해당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부랑: 주거부정배회 (69'-72'), 거주부정배회 (73'-83'),
떠돌이 (84'-88'), 이후 사라짐.
구걸: 구걸사수부당이득 (69'-71'), 구걸사주부당이득 (72'-77'),
구걸사수부당이득 (78'-83'),
구걸부당이득 (84'-)

통계를 취합해보면 1972년, 1973년, 1975년에 특히 부랑으로 단속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71': 4702, 72': 6924, 73': 7119, 74': 5027, 75': 6899, 76': 3989). 그중에서도 1975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사람들을 단속하였다(75' 서울: 2733, 75' 부산: 1560).

구걸의 경우에는 1972년에 단속수가 예외적으로 큰데(71': 172, 72': 3065, 73': 404), 이는 충남에서 2130명을 단속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건수가 높은 해들, 가령 1976년(1195), 1980년(739), 1984년(735) 같은 경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크기 때문(각각 507, 530, 567)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2.3. 가두직업소년 관련 통계 (65~90)

가두직업소년과 관련된 통계로는 다음의 통계표를 사용하였다.

- ① 가두직업소년현황표
- ② 가두직업소년보도상황
- ③ 청소년선도

①은 1964년도부터 1966년도까지의 연보에 나온다. 그러나 '64년 말'의 수치와 '65년중'의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1965년도부터 취합하였다. ①에서는 '닝마주이', '구두담이', '신문팔이', '행상', '기타'

의 범주에 따라 지역별로 나온다.

②는 1967년도 연보에서부터 나온다. ②는 총 보도수와 ‘구직알선’, ‘BBS결연’,¹⁾ ‘취업알선’, ‘직장결연’, ‘수용보도’, ‘소년단가입’, ‘기술보도’, ‘기타’의 범주로 구성된다. 그러나 1972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연보에는 위의 범주가 사라지고, 지역별, 월별 보도수만 나온다. 1972년도 연보에는 1970년도부터의 수치가 나타나고, 이 수치는 1974년도까지 월별로 나오다가, 1975년도부터 분기별로 바뀐다. 몇몇 연도의 ②에서는 통계표에 표시된 ‘계’와, 필자가 직접 계산해본 실제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1980년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계: 16186, 실제 수치: 5631)

③은 가두직업소년현황(‘구두담이’, ‘신문팔이’, ‘기타’)과 가두직업소년보도(‘기술보도, 취업알선’, ‘취학알선’, ‘선도단체보도’, ‘기타(교양)’)의 범주로 구성된다. 1986년도 연보에는 1977년도부터의 수치가 나온다. 이때 가두직업소년현황의 수치와 가두직업소년보도의 수치를 각각 합산한 결과가 1981년까지는 일치하다가 이후부터 달라진다.

2.2.4. 정리

[표 2]는 1962-87년까지 각 연도별 부랑아 단속수, 경범죄 단속수, 가두직업소년과 관련된 통계를 취합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1) 1963년경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BBS(Big Brothers and Sisters)운동은 내무부 치안국이 적극적으로 이용한 선도 방안이었다. BBS운동을 통해 직업보도소년은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을 선도하는 동시에 감시의 대상으로 만든 기제였다(유진 2019: 106-107).

[표 2]. 경찰통계연보의 부랑아 수용, 단속 관련 통계표 취합

1. 결인 및 부랑아 단속		2. 경범죄										3. 가두직업소년				
연도	단속수	부랑	서울	부산	인천	서울	부산	충남	구결	-	-	보도	구두담이	신문팔이	행상	기타
1962	9,115												8,084	444	1,036	312
1963	17,025												8,221	663	1,729	274
1964	34,618															
1965	45,077															
1966	40,651															
1967	51,744											16,642				
1968	35,420															
1969	40,118	4,384			361											
1970	37,607	5,186			525							14,033				
1971	31,028	4,702			172							13,946				
1972	36,728	6,924	2,864	1,463	3,065	273	156	2,130				40,054				
1973	36,522	7,119	2,928	1,187	404	103	206					32,844				
1974	26,398	5,027	1,583	1,007	621	72	165					21,375				
1975	24,374	6,899	2,733	1,560	206	81	26					16,445				
1976	17,467	3,989	1,103	840	1,195	508	69					13,223				

1. 결인 및 부랑아 단속		2. 정범죄										3. 가두직업소년				
		부랑 전국	- 서울	- 부산	- 전국	구결	- 서울	- 부산	- 충남	현황	보도	구두담이	신문팔이	행상	기타	
연도	단속수	4,017	1,688	650	725	117	35			14,799	14,799	5,373	2,320		7,106	
1977	17,352															
1978	13,448	2,982	1,252	645	520	308	32			16,268	16,268	8,908	2,004		5,356	
1979	10,712	2,863	1,725	305	312	86	15			16,045	16,045	11,341	1,671		3,033	
1980	11,126	2,193	739	392	739	530	68			16,186	16,186	10,989	2,222		2,975	
1981	12,456	1,405	230	515	290	178	42			7,673	7,673	4,850	975		1,848	
1982	10,588	2,006	444	555	573	202	68			7,165	26,386	3,009	3,920		236	
1983	12,553	1,090	291	286	510	396	8			5,196	30,533	2,338	2,344		514	
1984	10,332	1,716	856	278	735	567	6			9,894	44,409	2,647	6,922		325	
1985	8,019	1,100	402	164	328	96	2			8,133	44,363	1,911	5,969		253	
1986	6,187	549	114	92	324	218	8			3,575	14,518	694	2,392		489	
1987	2,948	312	60	104	276	174	17			1,518	39,698	458	721		339	
1988		142	32	39	254	205	5			1,026	11,373	308	339		379	
1989					267	229	5			993	7,625	310	332		351	
1990					362	263	4			548	5,740	168	145		235	

[표 2]를 보면 결인 및 부랑아 단속의 추이와 경범죄로서의 부랑 단속의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항목은 1973년경부터 감소세를 띠다가(‘부랑’ 항목의 경우 1975년에 한 해 급증한다), 1980-84년 경에는 정체하고, 다시 1985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두직업소년의 경우 1972년과 1973년에 그 전후해와 비교하여 크게 늘어나고 그 후부터 감소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부랑아 단속과 유사하다. 한편 1977-81년에는 가두직업소년 중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범주화할 수 없었던 가두직업소년이 많았음을 암시한다.

3. 지방 통계

3.1. 서울통계연보

서울통계연보는 1963년도 연보와 1973년도 연보를 제외하고, 1961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연보를 참조하였다. 해당 연보는 1961년도는 서울시 총무과, 1962년도부터는 내무국, 1966년도부터는 기획관리관/실, 1989년도부터는 통계담당관이 담당하였다.

각 연보에서 부랑아수용보호상황, 후생및복지시설분포, 사회복지시설분포현황, 사회복지시설수용자수, 신체장애아수용자동태, 영육아수용자동태, 일반회계과목별결산을 참고하였다. 아래에서 부랑아 수용자, 부랑아 수용보호시설, 부랑아 관련 예산과 관련된 통계표를 각각 살펴보겠다.

3.1.1. 부랑아 수용자 관련 통계 (59'~76')

부랑아 수용자에 관해서는 부랑아수용보호상황을 참고하였다. 이 표는 1961년도 연보부터 나오다가, 1968년도 연보부터 사라지더니,

다시 1974년도 연보에 다시 등장해서 1977년도 연보까지 나타난다. 해당 통계의 형식은 보건사회통계연보의 부랑아수용보호상황표와 거의 일치한다.

통계의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지적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1962년도 연보의 통계와 1964년도 연보의 통계에 나타나는 1959-61년의 부랑아 관련 수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1962년도 연보에는 1960년의 부랑아 수용인원이 15,468명으로 나와있는데, 1964년도 연보에서는 1,909명으로 나와있다. 앞서 1960년대 초반에야 통계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부랑아 수용인원에 대한 집계 기준 역시 이 시점에 체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1962-67년도 연보에는 부랑아시설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점이다. 각 년도 연보에 나온 부랑아시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962년도 연보: 아동보호, 천애원

1964-67년도 연보: 아동보호소, 천우원, 갯생원, 희망소년원

통계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림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9-76년 서울시의 부랑아 수용자에 대한 통계를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수용자수는 1961년에 급증하고(60': 1909, 61': 6130), 1969-74년에 하락하다가(69': 7742, 74': 4078), 1975-76년에 다시 늘어난다(75': 6702, 76': 7627). 둘째, 재소자수는 1960-63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60': 986, 64': 3581), 1966-76년에는 완만히 감소한다(66': 3622, 76': 1267). 입소자에 비해 재소자 수의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역시 재소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셋째, 1959-66년 동안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경우 1961년을 제외하면 4-5개가 있었는데, 1968년 이후로는 1-2개의 시설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1.2. 부랑아 수용보호시설 관련 통계 (66'~87')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에 관해 세 가지의 통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이자 주된 통계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영육아시설과 관련된 것이며, 셋째는 신체장애자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통계표를 사용하였다.

- ① 사회복지시설수용자수
- ② 사회복지시설분포현황

①은 1965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연보에 나온다. 각 통계는 영육아시설, 미감아시설, 부랑아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의 시설수와 수용자수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도별로 사라지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시설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965년도 연보: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 양로시설, 신체장애아시설, 모자원시설, 자매원시설, 탁아원시설, 미인가모자원시설

1967년도 연보: (추가) 성인불구시설, 아동불구시설, 미감아시설, 부랑아시설

1974년도 연보: (추가) 사회복지이용시설

1978년도 연보: (삭제) 자매원시설, 미인가모자시설

1979년도 연보: (변경) 아동불구시설 → 맹농아시설, (추가) 정신박약아시설, (삭제) 미감아시설

②는 1982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연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에도 ①과 같이 각 종류별 시설수와 인원이 나타나는데, 이를 각 구별(종로, 중구, 용산 등)로 보여준다. 우선 각 연도별로 사라지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982년도 연보: 영아원, 육아원, 신체장애아시설, 부랑자시설, 모자
시설, 농아시설, 양로원시설, 탁아소, 기타
- 1983년도 연보: (삭제) 농아시설, (추가) 성인불구시설
- 1987년도 연보: (변경) 부랑자시설 → 부랑인시설, 탁아원 → 유아
원
- 1989년도 연보: (추가) 부랑아시설

한편 각 구별 부랑아(인)시설의 숫자가 변동되는 연도는 다음과 같다.

- 1982년도 연보: 은평구 (2개소, 3,246명)
- 1984년도 연보: 은평구 (2개소, 3,669명), 영등포구 (1개소, 73명),
동작구 (1개소, 873명)
- 1986년도 연보: 은평구 (2개소, 2,735명), 동작구 (2개소, 1,032명)
- 1987년도 연보: 은평구 (2개소, 2,955명), 동작구 (1개소, 1,247명)
- 1988년도 연보: 은평구 (2개소, 2,659명)
- 1989년도 연보: 은평구 (부랑인시설, 1개소, 1,826명), 동작구 (부랑
인시설, 1개소, 1175명), 은평구 (부랑아시설, 1개
소, 837명), 영등포구 (부랑아시설, 1개소, 53명)

부랑아 수용보호시설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이 관찰된다. 해당 통계의 재소자수와 3.1.1에서 본 부랑아 수용자
관련 통계의 수용자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부랑아수
용보호상황에 따르면 1976년 서울시의 부랑아 수용보호 관련 기관수
는 2개이고 재소자는 1,267명이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수용자수에 따
르면, 1976년 서울시의 부랑아 시설은 6개이며, 수용인원은 4,843명
이다.

그런데 1971-74년도 연보에서는 두 수치, 즉 부랑아수용보호상황
의 재소자수와 사회복지시설수용자수의 부랑자수가 일치한다. 이 사
실에 따르면 부랑아 수용보호시설과 부랑아시설을 분리해서 볼 필요

가 있으며, 두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하나의 시설이 존재하는 듯하다. 두 통계가 겹치는 시기는 1966-75년인데, 그중 두 수치가 겹치는 시기인 1971-74년 중 1974년을 제외하면, 시설수가 1개로 일치한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각 통계에서 사용되는 ‘부랑아시설’ 등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시설과 성인시설의 차이이거나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관련된 문서의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취합해보면 시설수와 수용자수가 거의 동일한 추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1.3에서 예산 관련 통계를 살펴본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는 서울시 예산에서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와도 거의 같다. 수용인원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보면, 1966-75년까지는 다소 하락하다가(66': 2590, 75': 1140), 1976년에 크게 치솟고(76': 4843) 1978년까지 급락한다(78': 1094). 이후 1983년경까지 다시 크게 늘어나다가(83': 4615)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88': 3001).

한편 영육아시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 ① 영육아수용자동태
- ② 아동복지

①은 1961년도부터 1979년도 연보까지 나오는데, 1964년도, 1969년도 연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당 통계표는 영육아시설의 시설수와, 입소자, 퇴소자 및 재소자의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입소자의 동태에 ‘부랑아’(혹은 ‘부랑아수용소에서 인수’ 등)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항목의 수치는 1964년과 1973년에 두드러진다(61': 2338, 73': 4483). 한편 1961년도 통계연보와 1965년도 통계연보에 나타나는 1959-61년의 해당 항목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②는 1980년도와 1981년도 연보에 나온다. 해당 통계의 형식은 ①

과 같다. 부랑아와 관련해서 ①과 달라진 점은, ‘부랑아’ 항목의 번역이 ‘Transferred of vagrant’에서 ‘vagrant children’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해당 항목은 1978년부터 0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장애아시설에 관해서는 신체장애(해)아수용자동태를 참고하였다. 해당 통계표는 1964년도, 1967년도, 1975년도 연보를 제외하고, 1961년도 연보부터 1981년도 연보까지 계속 나온다. 해당 통계표에 주목한 이유도 위와 같다. 입소자의 동태에 ‘부랑아수용소에서 인수’(혹은 ‘부랑아 인도’)가 있기 때문이다. 1961-64년, 1973-80년에 해당 항목에 수치가 기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중이 미미한 편이다. 마찬가지로 1961년도 통계연보와 1965년도 통계연보에서 나타나는 1959-61년의 수치가 다르다.

한편 1962-71년도 연보에서의 신체장애아수용자동태에는, 신체장애아 수용시설의 목록이 나온다. 각 연도별로 명단이 달라지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1961년도 연보: 삼육원, 희망의마을, 천애원

1965년도 연보: 삼성원, 천애원

1966년도 연보: 삼육원, 희망의마을, 천애원

1971년도 연보: 삼육원, 천애원

천애원의 경우, 1962년도 연보에는 부랑아시설의 하나로 나온다. 해당 시설이 신체장애아시설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의 시설이 동시에 여러 목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1.3. 예산 관련 통계 (60'~88')

서울통계연보의 ‘재정’ 부분에는 각 연도별 예산액과 결산액이 항목별로 나온다. 통계표의 형식이 계속 바뀌지만, 전년도 연보의 수치와 비교하면서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각 통계표에서는 일반회계예산과 결산, 그리고 당해 연도의 세목별 예산액과 결산액

을 볼 수 있다. 그중 부랑아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사업비’에 주목하였다.

사회사업비와 같은 세부 항목의 예산액과 결산액은 당해 연도에 한해 나오므로, 연보를 참조하지 못한 1962년과 1972년의 사회사업비는 알 수 없다. 한편 1982년도 연보부터는 사회사업비 항목이 사라지고 사회복지비 항목이 신설된다. 사회복지비는 사회사업비의 상위 범주로 보이는데, 1984년도 연보의 재정 항목을 보면 사회복지비 하에 사회사업비, 보건비, 환경녹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4년도 연보부터는 사회복지비 하의 사회사업비의 예산액이 1981년도부터 나오므로, 이를 통해 변동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1987년도 연보부터는 ‘사회사업비’라는 이름이 ‘복지사업비’로 대체된다.

사회사업비(복지사업비) 예산의 추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측면은 전체 예산액에서 사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1960년부터 1988년까지의 총 예산에서 사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약 5.5%이다. 그러나 1965년, 1971년, 1975년, 1981년의 예산에서는 7%가 넘었으며, 특히 1975년 예산에서는 사회사업비가 전체의 16.2%를 차지하였다.

두번째 측면은 전년 대비 증가량과 관련된다. 사회사업비의 전년 대비 증가량 평균은 약 59%(총 예산은 약 31.4%)였는데,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증가를 보인 연도는 1961년, 1971년, 1975년, 1979년이다. 1975년의 경우 전년에 대비하여 약 589.4% 증가하였다.

3.1.4. 정리

[표 3]은 1959-88년까지 각 연도별 서울시의 부랑아 수용보호시설과 수용자수 및 재소자수, 부랑아시설의 시설수와 수용인원, 그리고 총예산액과 사회사업비 예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서울통계연보의 부랑아 수용시설 및 예산 관련 통계표 취합

1. 부랑아 수용 보호시설				2. 부랑아 시설		3. 서울시 예산			
연도	시설수	수용자수	재소자수	시설수	수용인원	총예산액	사회사업비 예산 (원)	사회사업비 비중	사회사업비 전년 대비 증가율 (%)
1959	5	1,217	1,348						
1960	5	1,909	986			1,475,331,770	35,610,420	2.4	
1961	3	6,130	1,185			1,943,692,900	91,248,250	4.7	156.24
1962	4	8,366	1,885			2,356,374,750			
1963	4	7,251	2,504			2,798,587,120	141,267,600	5	
1964	4	8,550	3,581			3,411,704,100	205,212,711	6	45.265
1965	4	7,201	3,200			4,324,459,450	314,941,920	7.3	53.471
1966	4	8,667	3,622	3	2,590	7,812,710,900	385,045,900	4.9	22.259
1967				3	2,321	11,118,813,500	499,350,600	4.5	29.686
1968	2	7,427	2,285	2	2,289	14,921,981,500	463,911,500	3.1	-7.097
1969	2	7,742	1,759	2	1,807	21,259,349,400	668,283,000	3.1	44.054
1970	2	6,490	1,585	1	1,481	27,070,539,200	906,458,100	3.3	35.64
1971	1	5,490	1,565	1	1,565	35,532,611,000	2,684,332,000	7.6	196.134
1972	1	5,878	1,263		1,263				
1973	1	5,900	1,341	1	1,341	45,931,789,000	2,335,507,000	5.1	
1974	2	4,078	1,581	1	1,581	64,916,806,000	2,381,282,000	3.7	1.96
1975	2	6,702	1,043	3	1,140	101,547,790,000	16,416,433,000	16.2	589.395
1976	2	7,627	1,267	6	4,843	139,414,357,000	9,200,559,000	6.6	-43.955
1977				3	2,103	226,297,138,000	9,057,736,000	4	-1.552
1978				2	1,094	315,607,110,000	11,419,437,000	3.6	26.074
1979				3	2,235	402,760,292,000	24,683,507,000	6.1	116.153
1980				2	1,446	469,555,074,000	29,320,546,000	6.2	18.786
1981				2	3,246	535,535,000,000	42,311,000,000	7.9	44.305
1982				2	2,970	663,926,000,000	44,016,000,000	6.6	4.03
1983				4	4,615	840,084,000,000	47,013,000,000	5.6	6.809
1984				4	3,447	979,071,000,000	36,644,000,000	3.7	-22.056
1985				4	3,767	1,028,781,000,000	46,202,000,000	4.5	26.083
1986				3	4,202	1,046,309,000,000	56,432,000,000	5.4	22.142
1987				2	2,659	1,146,591,000,000	63,818,000,000	5.6	13.088
1988				2	3,001	1,561,758,000,000	89,147,000,000	5.7	39.689

[표 3]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부랑아 수용보호 시설이든 부랑아시설이든, 재소자 혹은 수용자의 추이가 시설수의 추이와 거의 일치한다. 1967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수와 재소자수, 입소자수가 감소하고, 1976년을 전후하여 부랑아시설의 시설수와 수용인원이 늘어난다. 둘째, 시설수와 수용자, 재소자의 추이가, 사회사업비 비중의 추이와 유사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설수와 재소자, 수용자가 모두 감소하다가, 1975-76년에 치솟더니, 1978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사회사업비는 1960년대 후반에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다가, 1975년에 치솟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3.2. 부산통계연보

부산통계연보는 1968-70년도 연보를 제외하고, 196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참조하였다. 부산통계연보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부산시 조사통계과, 그 후에는 기획관리실 산하의 통계담당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각 연보에서는 주로 부랑아수용자동태, 부랑아수용보호상황, 후생 및복지시설분포상황, 사회복지시설분포상황, 신체장애아동수용자동태, 일반회계과목별결산 등을 참고하였다. 서울통계연보와 마찬가지로 부랑아 수용자, 부랑아 수용보호시설, 부랑아 관련 예산과 관련된 통계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2.1. 부랑아 수용자 관련 통계 (62'~80')

부랑아 수용자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통계표를 참고하였다.

- ① 부랑아수용자동태
- ② 부랑아수용보호상황

①은 1966년도 연보에만 나오는데, 신규수용자와 재수용자를 포함한 입소자수, 퇴소자수, 재소자수와 퇴소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②는 1967년도 연보부터 등장한다. 1967년도 연보는 ①과 같은 형식인데 반해, 그 후의 연보에는 입소자, 퇴소자, 재소자의 수만 나온다. 그런데 1966년도와 1967년도, 그리고 그 후 연보의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1966년도 연보에는 1965년의 입소자가 9,511명으로 나오는데, 1967년도 연보에서는 839명, 또 1976년도 연보에서는 1,062명으로 나타난다. 1965년도와 1966년도의 연보의 경우 1960-64년의 수치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1976년도 연보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위의 서울통계연보에서 본 사례와 유사하다. 즉, 부랑아시설과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을 별개의 시설로 보아야 원활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976-81년도 연보에 근거하여 수치를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사항들이 있다. 우선 시설수가 단 하나이다. 1970-80년대 부산의 부랑아 수용시설이라고 하면, 형제복지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뒤에 나올 이길로 논문의 수치와 비교하면, 1977-78년도의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재소자수와 형제복지원의 총인원이 일치한다(77': 1111, 78': 1392). 또 1978-1980년도의 부랑아 수용보호시설 수용자수와 새마음지에 나타난 수용 실적이 일치한다(78': 3428, 79': 3638, 80': 1785). 한편 수용자수는 197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74': 778, 75': 2592), 197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1980년에 크게 떨어진다(79': 3638, 80': 1785). 재소자의 경우에는 1968-74년에는 감소세를 보인다가(68': 998, 74': 217), 1975년을 기점으로 1980년까지 계속 증가한다(75': 603, 80': 1577).

3.2.2. 부랑아 수용보호시설 관련 통계 (70'~89')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에 관해서는 세 가지 통계를 살펴보았다. 일차로 사회복지시설수용구호를 참조했고, 추가로 영육아시설과 신체장애자 통계를 참고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수용분포를 참고하였다. 해당 통계는 1976년도 연보부터 1990년도 연보까지 등장하는데, 영아 시설, 육아시설, 부랑아시설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숫자와 수용인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6-81년도 연보에는 각 시설의 숫자와 수용인원, 구호양곡 지급량, 생계비가 기입되어 있고, 1982-90년도 연보에는 각 시설의 숫자와 인원이 또 부산의 각 구별로 나와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부랑아시설에 주목하였는데, 해당 범주가 1982년도 연보부터 변화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부랑아시설(Accommodation of vagrant children)’ → ‘부랑자시설 (Institution for vagrant)’

각 구별 부랑자시설의 숫자가 변동되는 연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981년: 서구 (2개소, 1,226명)
- 1982년: 서구 (2개소, 1,359명)
- 1983년: 서구 (2개소, 1,356명)
- 1984년: 서구 (2개소, 1,462명)
- 1985년: 서구 (2개소, 1,509명)
- 1986년: 서구 (2개소, 1,450명)
- 1987년: 서구 (2개소, 1,493명), 북구 (1개소, 127명)
- 1988년: 서구 (3개소, 1,652명), 남구 (1개소, 96명)
- 1989년: 서구 (2개소, 1,794명), 남구 (1개소, 123명)

한편 1974년의 생계비 항목을 보면, 전후하는 해의 액수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73': 3913279, 74': 417700, 75': 5074900), 0을 하나 빠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975년에 수용인원과

구호양곡이 급증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74': 228명, 43,561kg, 75': 1,180명, 99,030kg). 수용인원은 그 이후로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 생계비의 경우 1980년 이후의 수치가 없어서 맥락을 보기가 어렵지만, 1980년의 생계비는 전해에 비해 약 1/7로 줄어든다(79': 77626, 80': 10760).

한편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북구 주례동에 위치하는데, 1987년 이전까지 북구에 부랑자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통계의 부랑자시설은 형제복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육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수용자동태를 참고하였다. 이는 1976-90년도 연보에 나오며, 각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의 전입자와 퇴소자의 구성인원과 재소자의 수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통계에도 전입자의 구성 요소에 부랑아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장애아시설에 관해서는 신체장애(해)아수용자동태를 참고하였는데, 해당 통계는 1966-67년도 연보와 1976-90년도 연보에 등장한다. 아동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각 연도별 입소자, 퇴소자의 숫자가 나와있고, 재소자의 경우 장애 종류별 수용인원 숫자가 나와있다. 여기서도 입소자를 구성하는 항목 중 '부랑아 인도(수)'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그 비중은 미미하다.

3.2.3. 예산 관련 통계(62'~89')

서울통계연보와 마찬가지로, 부산통계연보의 '재정' 부분에도 각 연도별 예산액과 결산액이 항목별로 나와있다. 여기서도 전년도 항목의 수치와 비교하면서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각 통계에서는 일반회계예산과 결산, 그리고 당해 연도의 세목별 예산액과 결산액을 볼 수 있다. 그중 부랑아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은 '사회사업비'와 그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복지사업비'이다. 이는 '사회복지비'의 하위 항목으로 나타난다.

1966-75년도 연보의 재정 부분에는 전년도 사회복지비 예결산액과 사회사업비 예산액이 모두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1976-81년도 연보에는 사회복지비와 사회사업비 결산액만 나타나는데, 사회사업비의 결산액은 ‘인건비’, ‘일반행정비’, ‘사무비’, ‘투자비’ 등으로 세분화된다. 한편 1982-1990년도 연보에는 ‘사회복지비’ 대신 ‘사회복지비’, 또 ‘사회사업비’ 대신 ‘복지사업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부산시에서 부랑아 정책에 소요된 예산의 추이를 보기 위해 사회복지비 결산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부랑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사업비와 복지사업비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나와있는 연보가 적기 때문에 그 흐름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비 결산액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부랑아 정책에 소요된 예산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각 년도 연보의 사회복지비(사회복지비)는 ‘보건비(보건위생비)’, ‘사회사업비(복지사업비)’, ‘청소위생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서울통계연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비(사회복지비) 결산액의 추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결산액에서 사회복지비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1965년부터 1989년까지 총 결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약 16.4%이다. 한편 1973년, 1974년, 1975년의 결산에서는 20%가 넘었으며, 1975년 예산에서는 사회복지비가 총 결산액의 28.3%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증가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비 결산액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비의 전년 대비 증가량 평균은 약 59%(총 결산액은 약 31.2%)였는데,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를 보인 연도는 1966년, 1975년, 1978년이다. 특히 1972년의 경우 전년에 대비하여 약 127.5% 증가하였다.

3.2.4. 정리

[표 4]는 1962-89년까지 각 연도별 부산시의 부랑아 수용보호시설

과 수용자 및 재소자수, 부랑아시설의 시설수와 수용인원, 그리고 총 결산액과 사회복지비(복지사업비) 결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부산통계연보의 부랑아 수용시설 및 예산 관련 통계표 취합

1. 부랑아 수용 보호시설				2. 부랑아 시설		3. 부산시 결산			
연도	시설수	수용자수	재소자수	시설수	수용인원	결산액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결산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비중	직전년도 대비 증가율
1962	1	1,028	821			453,510,833			
1963	1	1,022	811			664,808,887			
1964	1	1,040	809			677,502,999.1			
1965	1	1,062	765			1,110,406,118	195,685,755	17.6	
1966	1	987	787			1,949,647,588	315,498,737	16.2	61.23
1967	1	1,037	813			2,776,160,765			
1968	1	1,322	998			4,049,355,995			
1969	1	989	698			6,837,127,213			
1970	1	935	635	1	423	7,388,081,434	950,648,166	12.9	
1971	1	889	601	2	589	9,582,905,832	878,861,171	9.2	-7.55
1972	1	891	231	2	344	10,518,819,507	1,999,687,742	19	127.53
1973	1	619	156	2	248	12,876,275,000	2,742,943,000	21.3	37.17
1974	1	778	217	2	228	16,797,870,820	3,749,354,331	22.3	36.69
1975	1	2,592	603	3	1,180	23,050,907,000	6,524,916,000	28.3	74.03
1976	1	3,126	852	3	1,181	26,746,333,000	4,913,133,000	18.4	-24.7
1977	1	2,728	1,111	3	1,228	40,040,094,000	5,671,034,000	14.2	15.43
1978	1	3,428	1,392	3	1,279	59,163,163,000	9,022,761,000	15.3	59.1
1979	1	3,638	1,293	3	1,106	86,790,130,000	12,164,652,000	14	34.82
1980	1	1,785	1,577	3	1,247	125,615,668,000	16,488,230,000	13.1	35.54
1981				2	1,266	132,241,131,000	22,461,453,000	17	-99.86
1982				2	1,359	151,564,595,000	28,073,776,000	18.5	24.99
1983				2	1,356	177,143,352,000	31,571,403,000	17.8	12.46
1984				2	1,462	206,820,389,000	32,266,442,000	15.6	2.2
1985				2	1,509	226,371,383,000	35,776,375,000	15.8	10.88
1986				2	1,450	246,269,394,000	44,687,430,000	18.1	24.91
1987				3	1,620	337,169,825,000	58,448,634,000	17.3	30.79
1988				4	1,748	374,009,290,000	52,618,719,000	14.1	-9.97
1989				3	1,917	547,676,233,000	63,462,163,000	11.6	20.61

[표 4]를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1974년 이후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수용자수, 재소자수와 부랑아시설의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수용자수는 1975년에 크게 증가하고 1980년에는 크게 감소한다. 반면 부랑아시설 수용인원은 1975년에 크게 늘어난 이후 계속 증가한다. 둘째,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수용자수와 부랑아시설의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난 1975년에 사회복지비가 총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통계연보에서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두 지역에서 모두 부랑아시설의 수용인원과 사회사업비가 총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에 급증한다. 1975년에 급증한 사회사업비/사회복지비의 비중은 1977년까지 하락세를 보인다가, 다시 1981년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4. 형제복지원 통계

4.1. 새마음 (8505~87023)

‘새마음’은 형제복지원에서 월 단위로 발행한 잡지이다. 1987년 2월호가 76호인 것을 보면, 1980년경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각 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원장, 중대장, 소대장, 수용인 등 형제복지원 구성원들의 수기이다. 이러한 수기는 대개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열심히 일해서 사회로 복귀해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간증이나 참회 수기 등 종교와 관련된 부분도 많다.

둘째는 부록으로, 형제복지원 현황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다. 연도별 입소자 및 퇴소자수, 입소경위, 사망자 명단 등 본원과 관련된 수치와, 정신요양원 입소자 및 퇴소자수, 질환별 환자수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1987년 2-3월호(이하 87023호) 151쪽에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이 있다. 여기서 한 수용자가 ‘부록면에 틀린 사항이 많은것 같은데 시정하여 주셨으면.....’이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편의상 행정

분야인 부록의 자료는 본부에서 관장해 왔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새마음지의 부록 부분의 작성 주체는 형제복지원 본부이며, 이러한 기록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1.1. 인원, 시설 관련 통계

각 호별 부록에서 인원과 시설 관련 통계를 살펴보자. 우선 새마음지 8505,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호를 참고해서 ‘출신도별 수용현황’, ‘연령별 변동’, ‘정신요양원 인원 변동’, ‘수용 실적’, ‘퇴원 변동’ 항목을 취합하였다.

새마음지의 통계에 나온 여러 통계는 해당 권호가 발행된 연도의 연초부터 누적된 수치로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기간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기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를 1985년 9-10월, 1985년 11-12월, 1986년 1-2월, 1986년 3-4월로 나누었다. 가령 8510호에는 198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수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8508호의 수치를 제하면 1985년 9-10월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다.

우선 인원 관련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새마음지 각 호에 나온 형제복지원 출신도별 수용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형제복지원 출신도별 수용 현황

호수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기타
8505	3,078	168	74	66	58	66	81	165	354	673	1,056	21	296
8508	2,795	124	53	63	58	64	82	156	289	600	1,033	18	255
8510	2,919	117	54	57	50	63	86	156	290	628	1,078	17	323
8511	2,977	115	56	54	51	60	88	161	297	646	1,108	16	325
8512	2,948	113	56	47	45	54	83	156	296	639	1,114	15	330
8601	3,011	113	57	44	46	57	81	162	300	650	1,133	14	354
8602	2,816	96	46	46	42	52	64	155	284	585	1,087	13	346
8603	2,872	97	47	44	44	54	63	152	290	588	1,123	12	358
8604	3,010	98	46	45	44	54	63	153	297	606	1,227	12	365
8605	3,033	98	46	45	44	54	63	153	297	606	1,227	12	371
8701	3,164	114	65	63	65	74	97	117	330	540	1,375	14	310
87023	2,896	112	65	63	65	74	93	117	330	530	1,123	14	310

[표 5]를 보면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에는 부산과 경남 출신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은 ‘기타’이다. 뒤에서 살펴볼 이길로 논문과 비교해 보면 ‘기타’ 항목의 수치는 고아원에서 온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논문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다. 아마 고아원에서 온 인원과 자신의 출신지를 모르는 인원의 수를 합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표 5]에서 동기간별로 구간을 나누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동기간별 형제복지원 출신도별 수용 현황

호수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기타
8509-8510	124	-7	1	-6	-8	-1	4	0	1	28	45	-1	68
8511-8512	29	-4	2	-10	-5	-9	-3	0	6	11	36	-2	7
8601-8602	-132	-17	-10	-1	-3	-2	-19	-1	-12	-54	-27	-2	16
8603-8604	161	1	-1	1	0	0	0	1	7	18	104	0	13
8701	-268	-2	0	0	0	0	-4	0	0	-10	-252	0	0

가령 [표 6]에서 ‘8509-8510’은 198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출신도별 수용 현황에서,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제한 것이다. 이를 통해 1985년 9월 동안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다. [표 6]을 보면 부산과 경남 출신 수용자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987년 1월의 경우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형제복지원을 빠져나갔으며, 부산 출신의 수용자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새마을지의 연령별 변동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형제복지원 연령별 변동 현황

호수	계	1-9	10-15	16-18	19-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8505	3,078	89	327	353	280	239	293	285	294	305	290	288	27
8508	2,795	94	339	328	248	207	264	257	268	263	254	241	32
8510	2,919	103	345	354	273	249	272	264	267	272	260	240	20
8511	2,977	103	345	368	287	254	281	269	279	270	259	238	24
8512	2,948	101	339	359	301	250	275	266	280	271	253	229	22
8601	3,011	101	342	354	321	265	278	271	290	271	258	233	25
8602	2,816	101	331	343	285	266	260	256	266	235	231	218	22

호수	계	1-9	10-15	16-18	19-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8603	2,816	101	331	343	285	266	260	256	266	235	231	218	22
8604	3,010	99	351	339	324	288	313	260	273	263	244	228	26
8605	3,033	99	351	339	314	238	659	215	223	219	194	178	4
8701	3,353	107	405	403	316	327	379	298	298	293	276	214	31
87023	2,896	107	259	260	311	317	324	289	287	274	158	31	31

[표 7]을 보면 10-20대의 변동이 심하고, 1986년 4월에 31-35세의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다(8604: 313, 8605: 659, 8607: 379).

[표 7]을 동기간별로 나누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동기간별 형제복지원 연령별 수용 현황

호수	계	1-9	10-15	16-18	19-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8509-8510	124	9	6	26	25	42	8	7	-1	9	6	-1	-12
8511-8512	29	-2	-6	5	28	1	3	2	13	-1	-7	-11	2
8601-8602	-132	0	-8	-16	-16	16	-15	-10	-14	-36	-22	-11	0
8603-8604	194	-2	20	-4	39	22	53	4	7	28	13	10	4
8701	-457	0	-146	-143	-5	-10	-55	-9	-11	-19	-118	-183	0

새마음지에 나온 정신요양원 인원 변동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형제복지원 정신요양원 인원 변동 현황

구분	8505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남	156	215	228	219	219	242	264	247	237	226	255	229
여	85	135	141	136	136	126	163	159	154	151	140	132
계	241	350	369	355	355	368	427	406	391	377	395	361

정신요양원 인원은 타 항목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 형제복지원 전체 인원의 남녀 비율은 약 7.1:1(남: 2585, 여: 363)이었는데, 정신요양원 남녀 평균의 비율은 1.65:1(남: 228.1, 여: 138.2)로 정신요양원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정신요양원은 1983년에 시설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985년 5월과 8월 사이에 요양원 인원이 100명 이상 늘어나는 것도 특징적이다.

[표 9]를 동기간별로 나누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동기간별 형제복지원 정신요양원 인원 변동 현황

구분	8509-8510	8511-8512	8601-8602	8603-8604	8701
남	13	-9	45	-21	-26
여	6	-5	27	-8	-8
계	19	-14	72	-29	-34

새마음지의 수용 실적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형제복지원 수용 실적 현황

구분	84'	8501-8505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시/구청	259	85	136	162	175	181	193	8	19	31	72	161	7
경찰서	3,962	1,202	2,074	2,632	2,891	3,149	3,411	292	538	879	1,236	2,110	131
봉사센터 의료원 부산영공안실 기타	134	56	129	256	303	318	344	46	60	100	119	249	32

[표 11]을 보면 ‘경찰서’ 항목의 수용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84’: 4355 중 3962, 85’: 3648 중 3149, 86’: 2520 중 2110).

[표 11]를 동기간별로 나누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동기간별 형제복지원 수용 실적 현황

구분	8509-8510	8511-8512	8601-8602	8603-8604	8701
시/구청	26	19	8	23	7
경찰서	558	517	292	587	131
봉사센터/의료원/부산영공안실/기타	127	62	46	54	32

[표 12]를 보면 1986년 초의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형제복지원 총인원이 감소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음지에 수록된 퇴원 변동 현황은 [표 13]과 같다.

[표 13] 형제복지원 퇴원 변동 현황

항목	84'	8501-8505	추가항목	8508	항목	8510	8511	추가항목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귀가					귀가											
서신 발송	1,988	31		1,142	서신발송	1,468	1,633		1,792	1,892	164	286	464	655	1,569	2,974
수용 확인	196	5		84	수용확인	105	122		133	144	9	22	23	23	77	145
진화 연락	228	14		67	진화연락	79	89		91	106	6	15	15	29	65	124
귀가 조치	239	66		147	귀가조치	197	223		226	270	14	19	27	27	87	160
전원					전원											
일반 시설	138	111		119	일반시설	132	134		134	134						
특수 시설	661	19		395	특수시설	446	446		515	515	306	306	306	438	1,356	2,406
연고지 이송	32			105	연고지 이송	105	105		105	105	12	12	12	12	48	84
탈원					탈원											
탈원	267	64		162	탈원	231	259		303	339	15	58	104	120	297	579
병원 탈원	62	16		34	병원 탈원	38	40		44	49	4	9	17	29	59	114
사망	39	24		43	사망	54	62		71	89	10	15	20	26	71	132
경찰 인계	86	42		95	경찰인계	116	118		9	15						
기타	83	10		12	기타	21	22		13	13			1	5	7	14
계	4,019	1,122		2,405	계	2,992	3,253		3,561	3,798	541	756	1,011	1,406	3,714	6,887

[표 13]을 보면, 8508호부터 ‘보건소 인계’ 항목이, 8512호부터 ‘검찰 인계’ 항목이 도입되는데, 전반적으로 서신 발송에 의한 귀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3]을 동기간별로 나누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동기간별 형제복지원 퇴원 변동 현황

구분	8509-8510	8511-8512	8601-8602	8603-8604	8701
귀가					
서신 발송	326	324	164	300	234
수용 확인	21	28	9	14	11
전화 연락	12	12	6	9	19
귀가 조치	50	29	14	13	15
전원					
일반 시설	13	2	0	0	
특수 시설	51	69	306	0	0
연고지 이송	0	0	12	0	0
탈원					
탈원	69	72	15	89	132
병원 탈원	4	6	4	13	2
사망	11	17	10	10	10
경찰 인계	21	9	1	14	15
검찰 인계	0	9	0	0	
기타	9	-8	0	1	0
계	587	569	541	470	438

[표 14]를 보면 1986년 초에 특수 시설 전원 수치가 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8511-8512: 69, 8601-8602: 306, 8603-8604: 0). 나머지 수치는 대개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음으로 새마음지에 나온 형제복지원의 인력, 수익, 의료 교육 항목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해당 항목에는 이탈자가 많고 누적 통계로만 구성되어 한눈에 파악하기가 다소 어렵다.

우선 새마음지에 나온 인력 항목은 본원 인력, 교회 인력, 정신요양원 인력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각각의 인력을 표로 나타내면 [표 15], [표 16], [표 17]과 같다.

[표 15] 형제복지원 본원 인력 변동 추이

구분	8505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구분	8701	87023
원장	1	1	1	1	1	1	1	1	1	1	원장	1	1
부원장	1	1	1	1	1	1	1	1			부원장	1	1
총무	2	2	2	2	2	2	2	2	2	2	총무	1	1
사업부장								1	1	1	부장	2	2
지도부장								1	1	1			
사무직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사무직	28	28
축탁의사	3	3	3	3	3	3	3	3	3	3	축탁의사	3	3
간호원	6	6	6	6	6	6	6	8	8	8	간호원	10	10
보모	9	9	9	9	4	4	4	4	4	4	보모	2	2
영양사	1	1	1	1	1	1	1	1	1	1	영양사	1	1
직업보도교사	15	15	15	15	89	89	89	89	89	89	자활지도교사	16	16
											원목	1	1
											상담교사	1	1
											전도사	3	3
											운전기사	7	7
											취사원	74	74
기타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6	105	105	기타	106	106
계	171	171	171	171	240	240	240	246	244	244		257	257

[표 16] 새마음교회 인력 변동 추이

구분	8505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원목	1	1	1	1	1	1	1	1	1	1	1	1
전도사	2	2	2	2	2	2	2	2	2	2	3	3
자치(회)임원	12	12	12	12	12	12	12	13	11	11	13	13
재직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12	12
교사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19	19
종교부원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49	49
기타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96	96
계	172	172	172	172	172	172	172	173	171	171	193	193

[표 17] 형제복지원 정신요양원 인력 변동 추이

구분	8505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원장	1	1	1	1	1	1	1	1	1	1	1	1
총무	1	1	1	1	1	1	1	1	1	1	1	1
간호원	3	7	6	6	6	6	6	8	8	8	9	8
보모	3	3	3	3	3	3	3	3	3	3	2	2
축탁의사	3	3	3	3	3	3	3	3	3	3	2	2
기사	1	1	1	1	1	1	1	1	1	1	1	1
사무직	2	3	4	4	5	4	4	4	4	4	3	2
상담직		1	1	1	1	1	1	1	1	1	1	1
관찰요원	35	35	38	38	38	38	38	39	39	39	39	39
계	49	55	58	58	59	58	58	61	61	61	59	57

[표 15], [표 16], [표 17]을 각각 살펴보겠다. 우선 본원 인력의 변동 추이를 보면, 보모와 직업보도교사의 변동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1985년 12월부터 보모 수가 줄어들고(9→4), 직업보도교사 수가 크게 늘어난다(15→89). 세부 항목을 보면, 1986년 3월부터 사업부장과 지도부장 자리가 생겨난다. 또한 전체적으로 ‘기타’의 비중이 큰데, 이는 중대장, 소대장 등 형제복지원의 내부인력으로 추정된다. 총직원수의 경우, 1985년 12월 이후로 크게 증가하지만, 대개 일정하게 나타난다.

새마음교회 인력도 일정하게 나타난다. 다만 1986년 5월과 1987년 1월 사이에 ‘재직’과 ‘교사’가 반으로 줄고, ‘기타’가 2배 이상 늘어난다. 한편 [표 16]의 원목, 전도사는 [표 15]의 원목, 전도사와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정신요양원에서는 1985년 5월과 8월 사이에 간호원이 3-4명 늘어났고, 상담직 자리가 생겨난다. 축탁의사와 간호원은, [표 15]와 [표 17]에서 1987년 1월 전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다. 새마음지의 수익 항목은 수용자들이 창출한 수익액을 각 활동별로 정리해놓았다. 해당 항목을 취합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형제복지원 수용자 수의 현황

구분	84.1.1.- 12.31.	85.1.1.- 3.31.	85.1.1.- 85.7.31.	구분	85.1.1.- 85.9.30.	85.10.1.- 85.11.30.	85.12.1.- 86.1.31.	구분	86.1.1.- 86.2.28.	86.3.1.- 86.4.30.	86.5.1.- 86.12.31.
목공	18,301,000	285,000	665,000	목공	1,096,000	315,000	180,000	목공	250,000	270,000	3,910,500
목공_원생 지급액	18,301,000	285,000	665,000	목공_원생 지급액	1,096,000	315,000	180,000	목공_원생 지급액	250,000	270,000	4,865,500
미장	9,079,000	60,000	60,000	미장	60,000	0	0	미장	0	0	200,000
미장_원생 지급액	9,079,000	60,000	60,000	미장_원생 지급액	60,000	0	0	미장_원생 지급액	0	0	200,000
재봉	480,000	120,000	289,392	재봉	459,392	145,000	40,000	재봉	0	0	6,999,173
재봉_원생 지급액	480,000	120,000	289,392	재봉_원생 지급액	459,392	145,000	40,000	재봉_원생 지급액	0	0	10,962,773
철공	2,070,000	555,000	1,055,000	철공	1,560,000	585,000	490,000	철공	400,000	105,000	2,265,000
철공_원생 지급액	2,070,000	555,000	1,055,000	철공_원생 지급액	1,560,000	585,000	490,000	철공_원생 지급액	400,000	105,000	2,485,000
운전(취업)	3,355,000	1,495,000	3,125,000	운전(취업)	4,260,000	1,110,000	642,200	운전(취업)	820,000	820,000	1,455,000
운전(취업)- 원생지급액	3,355,000	1,495,000	3,125,000	운전(취업)- 원생지급액	4,260,000	1,110,000	642,200	운전(취업)- 원생지급액	820,000	820,000	1,605,000
이발	1,702,500	666,000	1,219,400	이발	1,466,900	364,100	930,900	이발	364,700	404,100	1,851,200
이발_원생 지급액	1,702,500	666,000	1,219,400	이발_원생 지급액	1,466,900	364,100	930,900	이발_원생 지급액	364,700	404,100	2,073,100
외부(취업)	21,313,244	3,225,200	8,220,120					외부	406,000	0	8,702,008

구분	84.1.1.- 12.31.	85.1.1.- 3.31.	85.1.1.- 85.7.31.	구분	85.1.1.- 85.9.30.	85.10.1.- 85.11.30.	85.12.1.- 86.1.31.	구분	86.1.1.- 86.2.28.	86.3.1.- 86.4.30.	86.5.1.- 86.12.31.
외부 원생 지급액	21,313,244	3,225,200	8,220,120					외부 원생 지급액	406,000	0	8,702,008
감부	9,573,699			외부(원내)	19,427,680	8,581,575	6,028,593	원내	3,088,840	4,401,924	25,190,686
잡부 원생 지급액	9,573,699			외부(원내) 원생지급액	19,427,680	8,581,575	6,028,593	원내 원생 지급액	3,088,840	4,401,924	26,920,686
수익 총액	65,874,443	6,406,200	14,633,912	수익 총액	28,329,972	11,100,675	8,311,693	수익 총액	5,329,540	6,001,024	50,573,567
원생지급액 총액	65,874,443	6,406,200	14,633,912	원생지급액 총액	28,329,972	11,100,675	8,311,693	원생지급액 총액	5,329,540	6,001,024	57,814,067
외부 동원인원	244	60	1,375	외부 동원인원	3,780	-3,304	144	외부(원내) 동원인원	451	0	0
총 동원인원	968	147	1,550	총 동원인원	4,016	-3,498	159	총 동원인원	516	0	0

[표 18]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1986년 5월 이전까지는 수익과 원생지급액이 일치하지만 그 후부터는 원생지급액이 더 높다. 또 수익의 절반 이상, 최대 2/3까지가 ‘원내’에서 나온다. 이는 1986년 이전의 ‘잡부’와 같은 범주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한다. 1986년 5월 후에는 재봉과 철공, 이발, 외부(취업)로 인한 수익이 급증한다.

[표 18]의 수익을 연도별로 나타내면 [표 19]와 같다. 이때 1985년도 수익에는 1986년 1월 수익까지 포함되어 있다.

[표 19] 형제복지원 연도별 수익

1984	65874443
1985	47742340
1986	61904131

새마을지에서 의료 관련 항목을 살펴보겠다. 해당 항목은 형제복지원 내에서 이루어진 의료 활동에 대한 통계를 보여준다. [표 20]은 새마을지에서 의료 관련 항목을 취합한 것이다.

[표 20] 형제복지원 의료 현황

구분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자체진료											
치료	4,345	4,664	4,546	2,601	2,411	3,019	2,898	3,094	2,460	2,483	3,517
투약	2,080	2,374	2,693	1,925	2,016	2,700	2,685	2,824	2,234	3,327	3,409
주사	583	411	382	213	42	960	1,402	1,384	974	3,106	2,656
일일평균	241	298	246	158	161	223	249	281	215	444	319
축탁의사 내원 진료 (주 3회) (북부산의원)	1,643	1,390	1,572	1,221	1,197	1,191	1,066	1,130	1,179	1,073	952
의료 보험 환자 진료 현황											
1차병원	1,704	1,433	1,362	1,356	1,329	1,197	1,073	1,332	1,198	2,171	1,199
2차병원	18	16	12	31	5	22	1	5	0		
3차병원	2	4	6	4	0	2	1	1	1		

구분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1학년	58	48	46	44	41	41	85	75	74	47
2학년	26									25
3학년										
계	84	48	46	44	41	41	85	75	74	72
교사 수								23	23	17

[표 21]에서의 총 학생 수와 당시의 10-15세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개금분교, 야간중학교 총학생수와 10-15세 인원수 비교

구분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총 학생 수	323	276	296	328	319	319	334	323	334	335	335
10-15세 인원수	339	345	345	339	342	331	331	351	351	405	259
초3~중/10-15세 인원수	0.755	0.609	0.658	0.755	0.722	0.746	0.837	0.761	0.778	0.672	1.05

[표 21]에서 총 학생의 숫자는 거의 일정하다. 한편 [표 22]를 보면 10-15세 인원 대비 약 60-80%가 학생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아래 나이에 대해서는 1-9세라 세분화할 수 없었다. 87023에서 ‘초3~중/10-15세 인원수’가 1을 넘어가는 건 그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학교의 경우, 8508호까지만 1학년, 2학년으로 구분되고, 그 이후는 1반, 2반으로 구분되다가, 8605호에서부터 다시 학년제로 구분된다.

4.1.2. 정신질환자, 요양원 관련 통계

새마음지에는 본원 인원의 환자 상태별 분류와 지체 장애자별 분류, 또 요양원의 수용인원과 환자 상태별 분류가 별개의 항목으로 수록되어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우선 [표 23]은 본원의 환자를 상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23] 본원 - 환자 상태별 분류 현황

구분	정신 분열	기질성 뇌종양	알콜 중독	성격 장애	간질	망상	정신 박약	기타	계	
8505	남	54	2	12	3	4		4	1	80
	여	36	1		2	2		2	1	44
	계	90	3	12	5	6	0	6	2	124
8508	남	54	2	12	3	4		4	1	80
	여	36	1		2	2		2	1	44
	계	90	3	12	5	6	0	6	2	124
8510	남	89	5	5	4	14	2	6	3	128
	여	69	1	2	1	6		4	1	84
	계	158	6	7	5	20	2	10	4	212
8511	남	115	7	9	6	17	2	7	5	168
	여	87	2	2	1	6		5	2	105
	계	202	9	11	7	23	2	12	7	273
8512	남	109	5	7	5	14	1	8	8	157
	여	82	2	1	2	6		6	3	102
	계	191	7	8	7	20	1	14	11	259
8601	남	139	5	12	7	17	2	8	5	195
	여	97	2	1	3	6		7	3	119
	계	236	7	13	10	23	2	15	8	314
8602	남	41	2	5	2	4		1		55
	여	22			1	3				26
	계	63	2	5	3	7	0	1	0	81
8603	남	55	3	6	2	4		1	1	72
	여	26			1	3				30
	계	81	3	6	3	7	0	1	1	102
8604	남	87	3	6	2	4		1	1	104
	여	42			1	3				46
	계	129	3	6	3	7	0	1	1	150
8605	남	42	2	16	2	11	1	2	12	88
	여	9	1	1	4	2	2	2	5	26
	계	51	3	17	6	13	3	4	17	114
8701	남	110	2	29	3	11	3	6		164
	여	77	2	2	1	4	4	4		94
	계	187	4	31	4	15	7	10	0	258
8702	남	110	2	30	5	11	3	6		167
	여	79	2	2	1	4	4	4		96
	계	189	4	32	6	15	7	10	0	263

본원의 지체 장애자를 분류하면 [표 24]와 같이 나타난다.

[표 24] 본원 - 지체 장애자별 분류 현황

구분	지체 불구	정신박약	정신이상	성병	동상	농아	맹아	결핵	피부	치질	간질	골절	간장염	저능	정신질환	기타	계
8505	남인	91	131	7	9	29	6	27	25	25	16	7	12			123	710
	남아	12	54	7	21	8			82		3	1				41	229
8508	여인	6	30	119	8	6	3		9	3	9	1	1			18	216
	여아	3	16	4	1	3			14		3					16	60
	계	223	191	261	16	39	40	27	130	28	31	9	13			198	1215
8510	남인	203	44	68	9	4	18	10	10	27	8	7	17			101	532
	남아	10	44	2		16	7		29		2	3				36	149
8511	여인	8	15	38	7	5	4		5	4	3	3	2			24	121
	여아	3	19	1	1	2			11		2	2				11	52
	계	224	122	109	17	27	29	10	55	31	15	15	19			172	854
8510	남인	200	46	110	9	3	20	31	12	25	10	5	17			103	597
	남아	11	45	4		7	8		25		4	2				37	143
8511	여인	10	18	74	8	2	4		5	3	4	2	2			25	160
	여아	3	19	5	1	1			9		2	1				13	53
	계	224	128	193	17	13	32	31	51	28	20	10	19			178	953
8511	남인	199	46	147	7	2	22	6	10	24	12	7	18			110	644
	남아	11	47	4		5	9		18		5	3				37	139

구분	지체 불구	정신 박약	정신 이상	성별	동상	농아	맹아	결핵	피부	치질	간질	물질	간장염	저능	정신 질환	기타	계
8512	여인	11	22	95	8	2	4	3	4	2	4	1	2			28	186
	여아	3	19	4					7		2	1				16	52
	계	224	134	250	15	9	35	9	39	26	23	12	20			191	1021
	남인	198	46	135	5	4	22	6	18	26	10	5	21			113	634
8601	남아	11	46	8		6	9		23		4	4				39	150
	여인	10	23	91	6	2	5	3	5	2	4		2			31	184
	여아	3	19	5					8		2	1				15	53
	계	222	134	239	11	12	36	9	54	28	20	10	23			198	1021
8602	남인	200	45	168	5	24	22	6	25	23	13	4	24			121	711
	남아	11	46	10		31	9		31		4	3				42	187
	여인	10	24	107	7	5	5	3	6	2	4		1			33	207
	여아	3	19	6		4	1		9		2	1				16	61
8603	계	224	134	291	12	64	37	9	71	25	23	8	25			212	1166
	남인	195	45		6	31	22	6	26	19	3	3	26	131	50	105	676
	남아	9	46			38	8			28	1		2	23	1	36	192
	여인	10	24		7	5	5	2	5	1	2			65	22	33	181
8603	여아	2	19			4	1		8		1	1	1	10	1	15	63
	계	216	134		13	78	36	8	39	48	7	4	29	229	74	189	1112
	남인	195	45		6	31	22	6	26	19	3	3	26	131	50	105	676
	남아	9	46			38	8		28		1	2		23	1	36	192
8603	여인	10	24		7	5	5	2	5	1	2		1	65	22	33	182

구분	지체 불구	정신박약	정신이상	성별	동상	농아	맹아	결핵	피부	치질	간질	팔절	간장염	저능	정신질환	기타	계
	여아	2	19		4	1			8		1	1		10	1	15	62
	계	216	134		78	36	8	8	67	20	7	6	27	229	74	189	1112
8604	남인	214	46		24	22	6	13	23	16		2	23	143		92	632
	남아	10	47		29	8			28			1		27		17	167
	여인	12	24		5	5	2		3				1	74		22	153
	여아	2	20		7	1			4			1		16		6	57
	계	238	137		65	36	8	13	58	16		4	24	260		137	1009
	남인	220	46		24	22	6	13	23	16		2	23	143		92	638
8605	남아	10	57		29	8			28			1		27		17	177
	여인	22	24		5	5	2		3				1	74		22	163
	여아	2	24		7	1			4			1		16		6	61
	계	254	151		65	36	8	13	58	16		4	24	260		137	1039
8701	남인	226	16		2	23	7	25	21	19		2	26	153		201	727
	남아	14	44			7			21			2		33		22	143
	여인	17			1	7	2		4	1			1	78		53	113
	여아	4				1			4			1		18		10	38
	계	261	60		3	38	9	25	50	20		5	27	282		286	1021
	남인	226	16		2	23	7	25	21	19		2	26	153		201	727
87023	남아	14	44			7			21			2		33		22	143
	여인	17			2	1	7		4	1						22	143
	여아	17			2	1	7		4	1			1	78		53	113

정신요양원의 전체 인원 변동 현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정신요양원 인원 변동 현황

구분	8505	8508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605	8701	87023
남인	154	212	225	216	216	240	262	244	235	224	253	227
남아	2	3	3	3	3	2	2	3	2	2	2	2
여인	85	132	138	133	133	123	162	155	150	147	137	129
여아		3	3	3	3	3	1	4	4	4	3	3
계	241	350	369	355	355	368	427	406	391	377	395	361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원의 환자를 상태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정신요양원 환자 상태별 분류 현황

구분	정신 분열	기질성 뇌종양	알콜 중독	성격 장애	간질	망상	정신 박약	노인성 및 신경쇠약	기타	계	
8505	남	115	3	7	6	16	3	4	1	155	
	여	73			7	2		3		85	
	계	188	3	7	13	18	3	7	1	0	240
8508	남	148	4	18	10	24	3	5	2	1	215
	여	113			6	8		6		2	135
	계	261	4	18	16	32	3	11	2	3	350
8510	남	154	3	20	14	26	3	5	2	1	228
	여	116			6	10		3		2	137
	계	270	3	20	20	36	3	8	2	3	365
8511	남	146	3	19	14	26	3	5	2	1	219
	여	112			6	9		7		2	136
	계	258	3	19	20	35	3	12	2	3	355
8512	남	164	3	29	18	31	3	5	1	1	255
	여	110			6	9		7			132
	계	274	3	29	24	40	3	12	1	1	387
8601	남	160	3	24	15	31	31	3	5	1	273
	여	102			6	9	9		7		133
	계	262	3	24	21	40	40	3	12	1	406

구분	정신 분열	기질성 뇌종양	알콜 중독	성격 장애	간질	망상	정신 박약	노인성 및 신경쇠약	기타	계	
8602	남	201	3	30	13	30	4	5	1	1	288
	여	117			6	8		7		1	139
	계	318	3	30	19	38	4	12	1	2	427
8603	남	163	3	28	13	29	4	5	1	1	247
	여	137			6			7		1	151
	계	300	3	28	19	29	4	12	1	2	398
8604	남	182	3	27	12	30	4	5	1	1	265
	여	106			6	7		7			126
	계	288	3	27	18	37	4	12	1	1	391
8605	남	158	3	25	12	27				1	226
	여	137	0	0	6	8				0	151
	계	295	3	25	18	35				1	377
8701	남	165	10	29	18	19	3	6	2	3	255
	여	112		1	3	8		11		5	140
	계	277	10	30	21	27	3	17	2	8	395
87023	남	150	8	25	16	17	2	6	2	3	229
	여	117		1	2	8		9		5	132
	계	267	8	26	18	25	2	15	2	8	361

[표 23]과 [표 26]의 ‘정신분열’ 항목을 보면, 정신요양원의 환자 수가 본원의 환자 수보다 많다. 이를 볼 때 정신요양원과 본원의 통계가 아예 별개로 작성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형제복지원의 총 수용인원을 추산할 때 정신요양원의 인원을 별도로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1986년 5월호에 나온 통계를 바탕으로 그 이전까지 연도별 사망자와 사망 원인별 현황, 연도별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겠다. 우선 연도별 인원과 사망자를 표로 나타내면 [표 27]과 같다.

[표 27] 연도별 인원 및 사망자 현황

연도	총인원	사망자 (남)	사망자 (여)	계	(사망자/총인원)%
1975	561	2		2	0.36
1976	816	2		2	0.25
1977	1,111	21	5	26	2.34

1978	1,392	38	6	44	3.16
1979	1,325	32	4	36	2.72
1980	1,221	33	1	34	2.78
1981	1,713	33	3	36	2.1
1982	1,985	44	9	53	2.67
1983	2,525	55	2	57	2.26
1984	2,861	33	6	39	1.36
1985	3,011	78	11	89	2.96
1986.4.30	3,033	26	3	29	

[표 27]에서 사망자를 총인원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은 약 2%인데, 1977-83년까지는 2%를 상회하고, 1978년에는 3.16%의 비율이 나타난다.

한편 사망 원인별 현황은 [표 28]과 같다.

[표 28] 사망 원인별 현황

구분	뇌졸중	심부전	폐결핵	알콜중독	정신분열	간질	폐렴	고혈압	기타	계
남	71	65	72	31	21	10	9	96	42	397
여	11	9	6		2	1	2	4	15	50
계	82	74	78	31	23	11	11	100	57	447
(해당 원인 사망자/총사망자)%	18.34	16.55	17.45	6.94	5.15	2.46	2.46	22.37	12.75	

[표 28]을 보면 뇌졸중, 심부전, 폐결핵 및 고혈압이 사망 원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해당 질병이 원인이 된 사망률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인데, [표 29]에서와 같이 한국의 사회지표(1984)에 나온 1982년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와 비교해보면 확연하다.

[표 29] 형제복지원 사망 원인별 현황과 한국의 사회지표(1984)의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의 비교

구분	결핵	고혈압	뇌졸중	심부전	폐렴
새마을	17.5%	22.4%	18.3%	16.6%	2.5%
1982년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3.8%	5.7%	14.2%	8.2%	1.7%

[표 29]에서 한국의 사회지표(1984)의 ‘뇌졸중’, ‘심부전’, ‘폐렴’ 통계는 ‘뇌혈관 질환’, ‘폐순환 질환 및 기타형의 심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및 천식’ 항목을 가져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입퇴소 현황은 [표 30]과 같다.

[표 30] 형제복지원 연도별 입퇴소 현황

구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4.31
입소	1,448	2,554	3,005	3,428	3,638	1,785	3,115	2,997	4,019	4,355	3,948	1,428
퇴소	1,446	2,548	2,993	3,421	3,617	1,757	3,013	2,830	3,671	3,760	2,879	566
잔류	2	6	12	7	21	28	102	167	348	595	1,069	862

[표 30]을 보면 1975년 이후로 입소자는 계속 증가한다(75’: 1448, 76’: 2554, 77’: 3005). 이후 1980년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198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더니, 1983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82’: 2997, 83’: 4019). 퇴소자수의 추이도 입소자수와 비슷하다.

4.2. 대책위 기록물

형제복지원 대책위원회에서 확보한 여러 기록물을 살펴보면서 형제복지원의 예산, 기본재산, 인력과 관련된 항목을 취합하였다. 예산의 경우 형제복지원 예산액을 기반으로 했으나, 1968년과 1974년의 수치는 결산액을 사용하였다. 다른 연도들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4.2.1. 인력, 예산 통계 재구성 (64'~86')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의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 액수와 지출 액수를 각 연도별로 비교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슷한 성격의 항목들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가령 ‘국고보조’와 ‘지방비보조’를 ‘국고보조’로 합치는 식이다.

형제복지원의 연도별 수입액과 지출액을 연도별로 나타내면 각각 [표 31], [표 32]와 같다. ([표 31]에서 ‘자체 ? 수입’의 ‘?’는 화질상의 문제로 읽기 어려운 문자이다.)

[표 31] 형제복지원 연도별 수입액 추이²⁾

연도	재단 수입	국고 보조	외원 보조/ 기부금	기타	사업 수익	자체 ? 수입	기탁금수입/결연사업금	계
1964	269,240	273,750	551,200	50,000				1,144,190
1965	280,000	372,300	646,000	5,000				1,303,300
1966	399,000	67,880	425,000	50,000				941,880
1967								
1968	115,300	154,300	713,122	5,779		401,900		1,390,401
1969	168,000	281,050	729,000	7,514		720,000		1,905,564
1970	480,000	526,300	180,000	1,580,000				2,766,300
1971	420,000	421,575	650,000	1,442	1,420,000			2,913,017
1972	1,643,029	1,576,800	1,140,000					4,359,829
1973								
1974	331,000	3,108,350	7,685,366	77,549				11,202,265
1975	900,000	4,266,850	9,660,000	148,250	2,280,000			17,255,100
1976	10,360,000	5,365,500	19,320,000	196,122	2,760,000			38,001,622
1977	13,416,000	5,701,260	10,580,508	196,122	1,860,000			32,063,890
1978								
1979	2,700,000	57,065,000	6,060,000	500,000	60,200,000		15,000,000	141,525,000
1980								
1981								

2) 같은 기록물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수입 구조의 변화를 추적한 김일환(2021a)과 소준철(2020)의 수치는 대개 결산액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추산하였기에 이 글의 수치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연도	재단 수입	국고 보조	외원 보조/ 기부금	기타	사업 수익	자체 ? 수입	기탁금수입/결연사업금	계
1982	21,600,000	195,561,200	36,000,000	7,200,000	90,000,000			350,361,200
1983		881,000,000						
1984		1,197,000,000						
1985	27,600,000	1,254,648,000	28,800,000	148,000			56,327,000	1,367,523,000
1986		1,932,000,000						
1987		2,091,000,000						

[표 32] 형제복지원 연도별 지출액 추이

연도	주식비	부식비	피복, 연료, 교육, 보건 등	급료, 시설 유지, 사무 등	기타	자본 형성비	계
1964	472,200	182,500	138,500	332,400	18,590		1,144,190
1965	571,500	240,200	161,600	306,000	24,000		1,303,300
1966	124,800	226,300	240,600	373,600	11,005		976,305
1967							
1968	153,500	394,212	215,170	413,812	213,707		1,390,401
1969	216,000	505,890	395,520	410,000	378,150		1,905,560
1970	531,600		554,000	1,674,000	6,700		2,766,300
1971	276,000	702,625	949,000	925,000	60,372		2,912,997
1972	427,200	1,031,200	1,284,000	1,513,000	104,429		4,359,829
1973							
1974	2,949,120	3,152,686	1,667,621	2,197,721	3,630,810		13,597,958
1975	2,652,000	4,266,850	3,686,000	6,240,000	410,250		17,255,100
1976	3,600,000	5,365,500	3,012,000	25,596,000	428,122		38,001,622
1977	7,296,710	5,768,400	1,833,170	16,433,010	428,300		31,759,590
1978							
1979	16,206,000	13,359,000	11,800,000	27,960,000		72,200,000	141,525,000
1980							
1981							
1982	52,560,000	29,433,600	40,852,600	214,815,000	4,300,000	12,800,000	354,761,200
1983							
1984							
1985	413,752,540	339,798,750	181,233,000	458,416,000	3,123,000		1,396,323,290
1986							
1987							

[표 33] 형 제 복 지 원 수 입 액 및 지 출 액 재 구 성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재단 자체 수입	국고 보조	외원 보조(기부금)	기타	계	구호비	시설비	계	
연도	269,240	273,750	551,200	50,000	1,144,190	793,200	350,990	1,144,190	
1964	280,000	372,300	646,000	5,000	1,303,300	973,300	330,000	1,303,300	
1965	399,000	67,880	425,000	50,000	941,880	591,700	384,605	976,305	
1966									
1967	517,200	154,300	713,122	5,779	1,390,401	762,882	627,519	1,390,401	
1968	888,000	281,050	729,000	7,514	1,905,564	1,117,410	788,150	1,905,560	
1969	480,000	526,300	180,000	1,580,000	2,766,300	1,085,600	1,680,700	2,766,300	
1970	1,840,000	421,575	650,000	1,442	2,913,017	1,927,625	985,372	2,912,997	
1971	1,643,029	1,576,800	1,140,000		4,359,829	2,742,400	1,617,429	4,359,829	
1972									
1973									
1974	331,000	3,108,350	7,685,366	77,549	11,202,265	7,769,427	5,828,531	13,597,958	
1975	3,180,000	4,266,850	9,660,000	148,250	17,255,100	10,604,850	6,650,250	17,255,100	
1976	13,120,000	5,365,500	19,320,000	196,122	38,001,622	11,977,500	26,024,122	38,001,622	
1977	15,276,000	5,701,260	10,580,508	196,122	32,063,890	14,898,280	16,861,310	31,759,590	
1978									
1979	62,900,000	57,065,000	21,060,000	500,000	141,525,000	41,365,000	100,160,000	141,525,000	
1980									
1981									
1982	111,600,000	195,561,200	36,000,000	7,200,000	350,361,200	122,846,200	231,915,000	354,761,200	
1983		881,000,000							
1984		1,197,000,000				771,574,000	425,387,000	1,196,961,000	
1985	83,927,000	1,254,648,000	28,800,000	148,000	1,367,523,000	934,784,290	461,539,000	1,396,323,290	
1986		1,932,000,000				1,225,002,000	673,095,000	1,898,097,000	
1987		2,091,000,000				1,378,668,000	711,230,000	2,089,898,000	

[표 31]과 [표 32]에서 성격이 비슷한 항목을 한번 더 묶어보았다. 우선 ‘재단 수입’, ‘사업수익’, ‘자체 × 수입’, ‘기탁금 수입/결연사업금’을 합쳐서 ‘재단 자체 수입’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표 32]도 비슷한 성격의 항목을 묶어서 원생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호비’와 그렇지 않은 ‘시설비’로 구분하였다. 이때 ‘구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피복, 연료, 교육, 보건’을 합친 것이고, ‘시설비’는 ‘급료’, ‘시설’, ‘유지’, ‘사무’, ‘기타’, ‘자본형성비’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합친 결과는 [표 33]과 같이 나타난다.

[표 33]에서 1984년, 1986-87년도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국가 보조액의 수입액과 지출액만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수입액은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3]을 보면 ‘재단 자체 수입’은 1972년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1982년 이후로는 감소하는데, 1975년에는 전년 대비 약 9.6배 증가한다. 한편 ‘국고 보조’는 1971년 이래 증가세를 보이더니, 1978년 즈음하여 급격히 올라간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1978-79년 이래로 ‘국고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커진다. 또한 1982년 이후로 ‘구호비’의 액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표 32], [표 33]을 각 항목의 상대적 비율로 치환하여 살펴보겠다. [표 34], [표 35], [표 36]은 전체를 1로 잡았을 때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34] 형제복지원 연도별 수입액 구성비

연도	재단 수입	국고 보조	외원 보조/기부금	기타	사업수익	자체 × 수입	기탁금수입/결연사업금
1964	0.2353	0.2393	0.4817	0.0437	0	0	0
1965	0.2148	0.2857	0.4957	0.0038	0	0	0
1966	0.4236	0.0721	0.4512	0.0531	0	0	0
1967							
1968	0.0829	0.111	0.5129	0.0042	0	0.2891	0
1969	0.0882	0.1475	0.3826	0.0039	0	0.3778	0
1970	0.1735	0.1903	0.0651	0.5712	0	0	0

연도	재단 수입	국고 보조	외원 보조/기부금	기타	사업수익	자체 × 수입	기탁금수입/ 결연사업금
1971	0.1442	0.1447	0.2231	0.0005	0.4875	0	0
1972	0.3769	0.3617	0.2615	0	0	0	0
1973							
1974	0.0295	0.2775	0.6861	0.0069	0	0	0
1975	0.0522	0.2473	0.5598	0.0086	0.1321	0	0
1976	0.2726	0.1412	0.5084	0.0052	0.0726	0	0
1977	0.4184	0.1778	0.3397	0.0061	0.058	0	0
1978							
1979	0.0191	0.4032	0.0428	0.0035	0.4254	0	0.106
1980							
1981							
1982	0.0617	0.5582	0.1028	0.0206	0.2569	0	0
1983							
1984							
1985	0.0202	0.9175	0.0211	0.0001	0	0	0.0412
1986							
1987							

[표 35] 형제복지원 연도별 지출액 구성비

연도	주식비	부식비	피복, 연료, 교육, 보건 등	급료, 시설 유지, 사무 등	기타	자본형성비
1964	0.4127	0.1595	0.121	0.2905	0.0162	0
1965	0.4385	0.1843	0.124	0.2348	0.0184	0
1966	0.1278	0.2318	0.2464	0.3827	0.0113	0
1967						
1968	0.1104	0.2835	0.1548	0.2976	0.1537	0
1969	0.1134	0.2655	0.2076	0.2152	0.1984	0
1970	0.1922	0	0.2003	0.6051	0.0024	0
1971	0.0947	0.2412	0.3258	0.3175	0.0207	0
1972	0.098	0.2365	0.2945	0.347	0.024	0
1973						
1974	0.2169	0.2318	0.1226	0.1616	0.267	0
1975	0.1537	0.2473	0.2136	0.3616	0.0238	0
1976	0.0947	0.1412	0.0793	0.6736	0.0113	0
1977	0.2297	0.1816	0.0577	0.5174	0.0135	0
1978						
1979	0.1145	0.0944	0.0834	0.1976	0	0.5102

연도	주식비	부식비	피복, 연료, 교육, 보건 등	급료, 시설 유지, 사무 등	기타	자본형성비
1980						
1981						
1982	0.1482	0.083	0.1152	0.6055	0.0121	0.0361
1983						
1984						
1985	0.2963	0.2434	0.1298	0.3283	0.0022	0
1986						
1987						

[표 36] 재구성 이후의 형제복지원 연도별 수입액 및 지출액 구성비

구분 연도	수입액				지출액	
	국고 보조	외원 보조/기부금	재단 자체 수입	기타	구호비	시설비
1964	0.2393	0.4817	0.2353	0.0437	0.6932	0.3068
1965	0.2857	0.4957	0.2148	0.0038	0.7468	0.2532
1966	0.0721	0.4512	0.4236	0.0531	0.6061	0.3939
1967						
1968	0.111	0.5129	0.372	0.0042	0.5487	0.4513
1969	0.1475	0.3826	0.466	0.0039	0.5864	0.4136
1970	0.1903	0.0651	0.1735	0.5712	0.3924	0.6076
1971	0.1447	0.2231	0.6316	0.0005	0.6617	0.3383
1972	0.3617	0.2615	0.3769	0	0.629	0.371
1973						
1974	0.2775	0.6861	0.0295	0.0069	0.5714	0.4286
1975	0.2473	0.5598	0.1843	0.0086	0.6146	0.3854
1976	0.1412	0.5084	0.3452	0.0052	0.3152	0.6848
1977	0.1778	0.3397	0.4764	0.0061	0.4691	0.5309
1978						
1979	0.4032	0.0428	0.5505	0.0035	0.2923	0.7077
1980						
1981						
1982	0.5582	0.1028	0.3186	0.0206	0.3463	0.6537
1983						
1984					0.6446	0.3554
1985	0.9175	0.0211	0.0614	0.0001	0.6695	0.3305
1986					0.6454	0.3546
1987					0.6597	0.3403

[표 36]을 보면, 1979년부터 ‘국가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 1985년도에는 90%를 넘기게 된다. ‘외원 보조/기부금’의 비중은 1974-76년에 50%를 넘다. 한편 지출액 항목을 보면 1976-82년에는 ‘시설비’의 비중이 ‘구호비’보다 20-30% 정도 크다가, 1983년부터는 ‘구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더 커진다.

이어서 형제복지원 기본재산에 대해 살펴보겠다. 형제복지원 기본재산을 부동산 평수와 건물 평수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37]과 같다.

[표 37] 형제복지원 부동산 및 건물 평수

연도	부동산	건물
1964	3,046	200.6
1965	3,046	113.3
1966		
1967		
1968		
1969	3,046	158.77
1970		
1971	3,046	113.3
1972		
1973		
1974	3,046	298.28
1975	3,182	298.28
1976	3,182	321.84
1977	3,182	313.3
1978		
1979	20,387	1,642
1980		
1981		
1982	25,707	7,072.87
1983		
1984		
1985	133,409	7,262.29
1986	133,328	7,224
1987	135,408	7,343

[표 38]에서 1975년의 직원당 인원 수가 13.917였는데 1976년에는 65.067로 급증한다. 1983년은 1976년과 비교했을 때 약 24% 증가하는데, 1986년에는 약 41% 감소한다. [표 39]는 1986년의 직원수를 새마음지 8605에서의 인력 상황과 비교한 것이다.

[표 39] 새마음지와 대책위 기록물에서의 1986년 형제복지원 인력 현황 비교

새마음 8605호	명	대책위 기록물	명
원장	1	원장	1
부원장		총무	1
총무	2	생활지도원	23
사업부장	1	의사	2
지도부장	1	간호원	5
사무직	29	운전기사	4
촉탁의사	3	경비원	29
간호원	8		
보모	4		
영양사	1		
직업보도교사	89		
기타	105		
계	244	계	65

[표 39]를 보면 새마음의 인력과 대책위 기록물의 인력의 차이가 확연하다. 우선 총 직원이 각각 65명, 244명(‘기타’를 제외하면 135명)으로 차이가 크다. 또한 새마음지에서 89명이라는 ‘직업보도교사’는 대책위 기록물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새마음지에서 ‘사무직’으로 나온 항목이 ‘경비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항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4.3. 이길로 논문(1986)

이길로(1986)은 부산시 공무원이었던 이길로의 부산대학교 행정학

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목은 ‘부랑인 선도제도의 운용과 개선책’이다. 해당 논문은 당시 부랑아 정책의 배경과, 내무부 훈령 410호의 내용 및 함의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형제복지원의 연도별 인원수 등 다양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의 출처는 ‘새마음’으로 기록되어있다.

4.3.1. 인원 변동 통계

우선 논문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다. 논문에서 나타나는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자의 연령별 현황, 성별 현황, 출신지별 현황, 학력별 현황, 범죄 전과자 현황, 재수용자 현황은 각각 [표 40], [표 41], [표 42], [표 43], [표 44], [표 45]와 같다. 이후 해당 통계가 새마음지 통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겠다.

[표 40] 형제복지원 부랑아 수용자 연령별 현황

연도	10세 미만	11-20	21-30	31-40	41-50	51-60	60세 이상	계
1975	31	125	102	117	105	81	0	561
1976	39	212	142	163	155	105	0	816
1977	63	169	241	203	202	118	15	1,111
1978	92	337	288	265	253	140	17	1,392
1979	99	312	255	248	250	134	17	1,325
1980	82	318	225	242	226	113	15	1,221
1981	93	444	317	345	290	206	18	1,713
1982	91	499	391	399	338	248	19	1,985
1983	100	579	576	520	440	293	17	2,525
1984	108	631	614	644	486	341	37	2,861
1985	101	793	595	678	439	320	22	2,948

[표 41] 형제복지원 부랑아 수용자 성별 현황

연도	남	여	계
1975	541	20	561
1976	780	36	816

연도	남	여	계
1977	1,011	100	1,111
1978	1,225	167	1,392
1979	1,259	66	1,325
1980	1,172	49	1,221
1981	1,608	105	1,713
1982	1,816	169	1,985
1983	2,261	264	2,525
1984	2,526	335	2,861
1985	2,585	363	2,948

[표 42] 형제복지원 부랑아 수용자 출신지별 현황

연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고아원	계
1975	325	115	47	24	50	561
1976	478	178	36	41	83	816
1977	550	371	47	49	94	1,111
1978	612	554	62	63	101	1,392
1979	598	536	48	50	93	1,325
1980	552	467	50	55	97	1,221
1981	769	605	87	108	144	1,713
1982	914	654	103	141	173	1,985
1983	1,191	798	125	190	221	2,525
1984	1,269	943	180	218	251	2,861
1985	1,331	955	181	223	258	2,948

[표 43] 형제복지원 부랑아 수용자 학력별 현황

연도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계
1975	368	148	24	19	1	1	561
1976	425	314	42	31	2	2	816
1977	635	364	62	45	3	2	1,111
1978	738	519	72	56	4	3	1,392
1979	711	484	70	53	4	3	1,325
1980	691	420	60	42	5	3	1,221
1981	923	626	89	69	4	2	1,713
1982	988	814	101	75	4	3	1,985

연도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계
1983	1,418	888	129	81	5	4	2,525
1984	1,533	884	249	175	9	11	2,861
1985	1,507	924	302	197	10	8	2,948

[표 44] 형제복지원 부랑아 수용자 범죄 전과자 현황

연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이상	계
1975	65	27	5	5	3	2	0	0	107
1976	75	35	18	8	5	7	0	0	148
1977	88	41	37	15	12	10	0	0	203
1978	91	48	49	19	17	8	2	0	234
1979	85	50	48	25	19	11	4	0	242
1980	80	47	55	22	11	5	4	2	226
1981	100	57	62	30	8	6	4	2	269
1982	113	61	66	37	12	3	6	3	301
1983	113	67	74	42	10	3	5	2	316
1984	147	86	60	28	11	6	4	4	346
1985	215	102	67	25	13	8	6	5	441

[표 45] 형제복지원 부랑아 수용자 재수용자 현황

연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이상	계
1975	30	7	0	0	0	0	0	37
1976	75	25	0	0	0	0	0	100
1977	101	56	0	0	0	0	0	157
1978	135	84	0	0	0	0	0	219
1979	160	115	23	0	0	0	0	298
1980	190	146	41	0	0	0	0	377
1981	270	177	50	0	0	0	0	497
1982	360	185	65	0	0	0	0	610
1983	494	198	60	8	3	0	0	763
1984	540	216	72	12	4	0	0	844
1985	656	202	62	21	4	4	5	954

4.3.2. 새마음지와의 비교

[표 40], [표 41], [표 42], [표 43], [표 44], [표 45]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된 새마음지 통계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성별, 총인원, 장애종별 분류 인원 등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대개 일치하였다. 특히 1977년, 1979년의 연령별 현황에서 각 연령별 인원을 모두 합산한 값이 실제로 합산한 값과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아, 두 통계는 같은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977년과 1979년의 연령별 인원을 합산하면 각각 911, 1249이나, 새마음지와 논문에서는 1011, 1259로 나옴).

5. 결론

지금까지 보건사회통계연보, 경찰통계연보, 서울통계연보, 부산통계연보, 새마음지, 대책위 기록물, 이길로 논문(1986)에 나타나는 부랑아 정책과 관련된 여러 통계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기관이 발행한 보건사회통계연보와 경찰통계연보에서는 부랑아 단속과 수용 상황 등 직접적으로 부랑아에 대한 조치와 연관된 통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지방 차원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발행한 서울통계연보와 부산통계연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부랑아 단속과 관련된 직접적인 통계뿐 아니라 사회 복지에 사용된 예산을 연도별로 비교해봄으로써, 부랑아 정책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로 새마음지와 대책위 기록물, 그리고 이길로 논문(1986)에 나타나는 통계를 살펴보았다. 새마음지에서는 형제복지원과 정신요양원의 인원과 시설, 환자 등에 관한 통계를 보았는데, 확보된 새마음지 이전의 시기는 이길로 논문(1986)을 통해 보충할 수 있었다. 또한 대책위 기록물인 형제복지원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인력과 예산을 재구성해볼 수 있었다.

1960년대 초반은 부랑아 단속수와 부랑아시설에의 입소자가 늘고, 기관수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이다. 서울시에서도 1960년대 초반에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은 줄어들고, 시설의 재소자는 늘어난다. 또 서울시의 사회사업비 예산도 이때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97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반면, 부랑아시설의 입소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1970년대 내내 감소 추세였던 부랑아 단속수가 1975년에는 갑자기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부랑아시설 수용자수와 사회사업비/사회복지비의 비중도 전례없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부산시의 경우 1975년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부랑아시설과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수용인원 추세가 1970년대 말까지 이어진다. 형제복지원 인원도 1975년에서 1985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75년에 부랑아 단속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제정된 맥락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1980년대 들어서 부랑아 단속은 사라지는 추세에 들어서며, 부랑아시설 입소자수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부랑아시설 수용인원과 부산시의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수용인원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 한편 형제복지원 예산에서 국가 보조의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것은 1978년경부터이며, 그 후로도 국가 보조 액수와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사실들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보건사회부 단속과 내무부 단속의 차이이다. 보건사회부가 발간한 보건사회통계연보와 내무부가 발간한 경찰통계연보 모두에 부랑아 단속인원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그 수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 보건사회통계연보의 부랑아 단속 통계는 1975년부터 사라지는데, 이는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단속 업무를 1975년부터 내무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부서의 단속 업무와 단속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달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내무부가 단독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부랑아 시설과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차이이다. 서울통계연보와 부산통계연보에는 부랑아 시설과 부랑아 수용보호시설 통계가 별개로 나온다. 이러한 구별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점은 부랑아 관련 시설의 분류 기준이 상이하였음을 드러낸다. 부산시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이 부랑아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과, 하나뿐이었던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의 재소자수가 형제복지원의 총 인원수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형제복지원은 부랑아 수용보호시설로 분류되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당시의 시설 설치 기준이나 통계 집계 기준 등을 확인해봄으로써 각 시설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것이다. 이길로 논문(1986)에서 인용한 새마음지의 통계는 현재 확보된 새마음지의 통계와 일관되므로, 이는 형제복지원 본부에서 관장한 통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수용자의 발언에서 엿보이듯 해당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당시부터 지적되던 문제였다. 부산통계연보의 부랑아 수용보호시설에 대한 통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을 단초로 다른 자료와 비교해봄으로써 해당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부랑아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통계자료들을 원문 그대로 하나로 모아서 당시 부랑아 정책이 시행된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퍼즐 조각들을 취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 자료마다 소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하고, 통계가 활용되기 이전에 몇 가지 의문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자료들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국 현대사에서의 부랑아 정책에 대한 더욱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 및 지방 통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4. 『한국의 사회지표.』
내무부. 각 연도(1966-1990). 『경찰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 연도(1955-1990). 『보건사회통계연보.』
부산시. 각 연도(1966-1990). 『부산통계연보.』
서울시. 각 연도(1961-1989). 『서울통계연보.』

2. 학술논문

- 김아람. 2011. “5·16군정기 사회정책 -아동복지와 ‘부랑아’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82: 329-365.
- 김아람. 2020. “자활정착사업과 노역동원.”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I)』 257-312.
- 김영중. 2006.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 1950-7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 31-62.
- 김일환. 2019. “복지는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데: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로 본 형제복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19①: 39-87.
- 김일환. 2021a. “부랑인 단속 및 수용.”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II)』 235-306.
- 김일환. 2021b. “지역에서의 ‘부랑인’ 수용과 민간 사회복지 - 1960-70년대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9: 61-105.
- 박홍근. 2015.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변화 - 냉마주이 국가동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8: 227-261.
- 소준철. 2020.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 『사회와 역사』 125: 243-279.
- 유진. 2019. “거리의 치안권력과 ‘선도’의 통치기술 -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과 부랑아·우범소년.” 『사회와 역사』 123: 85-126.
- 이길로. 1986. “부랑인 선도제도의 운용과 개선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소영. 2016.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법과 사회』 51: 23-54.

추지현. 2018.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 - 형사사법의 효율성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7: 201-235.

3. 그외

형제복지원 대책위 기록물. 형제복지원사건-1, 2, 3, 5, 6, 7-1, 13-2, 13-5, 22-5, 114, 117, 118, 119, 120, 121, 122.

형제복지원. 『새마음.』